

613지방선거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분야 공약요청서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

공동대표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이재모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정연욱



함께 누리는 복지친화도시
대구광역시

I 부. 6·13 지방선거 사회복지 핵심공약 요구사항

- 13 1. 대구시민복지 고도화를 위한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 15 2. 대구 복지부시장제 도입
- 17 3.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법적, 심리적 지원체계 마련

II 부. 6·13 지방선거 분야별 공약 요구 사항

- 21 1. 시민복지분야
- 27 2. 노인복지분야
- 41 3. 장애인복지분야
- 65 4. 여성 및 다문화복지분야
- 75 5. 아동청소년복지분야
- 89 6.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분야

III 부. 6·13 지방선거 구군별 공약 요구 사항

- 103 1. 동구
- 113 2. 서구
- 119 3. 남구
- 133 4. 북구
- 141 5. 수성구
- 149 6. 중구
- 163 7. 달서구
- 177 8. 달성군



핵심 공약

순서	정책명	page
1	대구시민복지 고도화를 위한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13
2	[대구 복지부시장]제 도입	15
3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법적, 심리적 지원체계 구축	17

분야별 공약

순서	영역	정책명	page
1	시민	대구형 SOS 복지안전벨트 구축	21
2		건강취약지역 마을건강센터 설치	22
3		저소득 취약계층(차상위자) 빈곤예방 지원	23
4		지활사업을 위한 필수적 공간 지원	24
5		대구시민교육센터 설치	25
6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인프라 확충	26
7	노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27
8		베이비부머 지원계획 수립	28
9		독거노인 공동생활주택 운영	29
10		등급외자 노인야간보호서비스를 위한 기억학교 기능 확대	30
11		기억학교의 “대구형 치매관리사업 모델” 고유사업 인정	31
12		고령친화도시 대구 만들기	32
13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33
14		치매예방 수어교실 시범사업 운영	34
15		치매주간보호시설 실종예방 감지기 설치 의무화	35
16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 처우개선 및 운영비 현실화	36
17		대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인력기준 변경	37
18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 지원	38
19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통합시스템 구축 및 표준근무모델 마련	39
20	장애인	장애인 자립지원체계강화	41
21		Barrier Free지역 지정 운영-공중시설 접근성 및 안정성 확보	42
22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43
23		발달장애인 지역사회통합기반 구축	44

순서	영역	정책명	page
24	장애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기관 확대	45
25		중증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운영	46
26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47
27		장애학생 대상 계절학교 운영	48
28		장애인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49
29		장애인 복지시설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및 기능보강	50
30		구별 장애인 운동처방센터 및 건강운동실 개소	51
3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및 가족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	52
32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	53
33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사업 확대	54
34		탈원화에 따른 정신장애인 주거방안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55
3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인력 추가배치	56
36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증액	57
3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현실화	58
38		대책 없는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 개선	59
39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거주인의 잔여재산 법적 처리절차 간소화	60
40		거주시설의 편견개선을 위한 정책마련	61
41		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62
42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63
43		여성 (다문화)	모성보호책임도시 대구 선포
44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66
45	구군별 생활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및 운영지원 강화		67
46	다문화여성의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68
47	다문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69
48	다문화 가족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비 지원		70
49	시설 운영비 현실화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71
50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72
51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73

순서	영역	정책명	page
52	아동 청소년 (보육 청년 포함)	대구시민 복지키움(Keyum)센터 건립	75
53		아동학대 발생률 감소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76
54		아동생활시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정책마련	77
55		아동친화도시 대구	78
56		시설아동 (예능)학습지원비 지급	79
57		기초단체 단위의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80
58		청소년 거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설치	81
59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사” 배치 사업	82
6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행복권 추구	83
61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파견	84
62		동네 놀이 박물관 설치	85
63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책 마련	86
64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87
65		종사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정배치인력 기준 및 임금가이드라인 준수
66	사회복지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90
67	여성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일·가정양립 정책지원 강화		91
68	학생의 복지권 보장을 위한 전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		92
69	사단법인 사회복지종사자 경력 인정		93
70	장애인과외의 개방형 행정직(장애인당사자) 채용		94
71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행복한 사회복지시설		95
72	집단급식소 운영 시설 영양사 의무 배치		96
73	사회복지시설 퇴직적립금 운용관리 수수료 지원		97
74	전기차량 및 응급요원의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98
75	읍면동복지허브화 사례관리사업 전용 전기차 지원		99



순서	영역	정책명	page
1	동구	정부미지원(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사 배치 지원	103
2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상향	103
3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 1명 충원	104
4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104
5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동구 인증제안	105
6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장 이전(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106
7		청소년의 비행·일탈 방지를 위한 놀이 공간 마련	106
8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배치	107
9		청소년문화·예술 및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거리 조성	107
10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08
11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구조 현실화 개선	108
12		재가어르신을 위한 구비 증액 요청 (특별지원사업비)	109
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10
14		동구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소규모화 정책개선	110
15		동구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구비보조금 현실화	111
16	서구	서구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설치운영	113
17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노인복지관 운영비 현실화	113
18		장애인 직업재활 시 근로소득 산정 제외	114
19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개소	114
20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가 재정지원	115
21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116
22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실시	116
23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실시	117
24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 배치	117
25	남구	공폐가를 활용한 주거지원 사업	119
26		1인가구 고독사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19
27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120
28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21
29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표준근무 모델” 제시	122
30		기억학교의 [대구형 치매관리사업 모델] 고유사업 인정	123
31		무연고 독거노인에 대한 입원 등 의료적 지원책 마련	124
32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체계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125
33		요보호특수아동의 효과적 돌봄을 위한 전담돌봄인력 배치	126
34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 처우 및 환경개선	127
35		구군별 생활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확대 및 운영지원 강화	128
36		다문화여성의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129
37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130
38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130
39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정착과 고용활성화	131

순서	영역	정책명	page
40	북구	베이비부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계획 수립	133
41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및 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133
42		공공후견인의 활성화 방안 모색	134
43		입소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대규모 시설의 지원 확대	134
4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35
4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 충원	136
46		사회복지시설 안전강화 지원	136
47		종합회복지관 구비 운영비 지원 확대	137
48		기부식품제공사업(기초푸드뱅크, 푸드마켓)의 현실적인 운영 지원	138
49		북구지역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 연합나들이 지원	139
50	수성구	장애인 복지시설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및 기능보강	141
51		수성구 장애인 운동처방센터 및 건강운동실 개소(확충)	142
52		수성구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운영	142
53		구별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및 가족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	143
54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143
55		수성여성프라자 건립	144
56		베이비부머세대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145
57		50인이상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및 보조금 지원	146
58		응급안전알리미 수행을 위한 업무용차량 지원	146
59		아동복지시설 법정 종사자배치기준 준수 지역아동센터 시간제교사 근무시간 확대	147
60	중구	아동의 안전한 이동확보	149
61		전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배치	149
62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청년공동체 만들기	150
63		취업컨설팅 지원, 취업·창업지원	150
64		여성 안전 대피소 지정 운영	151
65		신나는 직장맘 보육환경 개선	151
66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	152
67		노인일자리 생산품 관공서 우선구매	152
68		중구지역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153
69		광역 노인복지관 건립	154
70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	154
71		모든 장애인들이 행복한 중구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155
72		다문화가족 장기정착화를 위한 광역형 다문화이주민원스텝지원센터 개소	155
73		저소득층 안정적인 보금자리 만들기	156
74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현실화	156
75		사회복지시설 출산휴가자 인건비 지원	157
76		행사성 사업 통폐합	157
77		중구사랑 토크콘서트 사업 추진	158
78		복지 주무부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158
79		사회복지시설 법정 의무교육 지원	159
80		사회복지시설 기본환경 마련	160
81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만들기 -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160
82		미세먼지 제로 사회복지시설 만들기 -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161
83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사업 예산 증액	161
84		웰레폰사업(독거노인 안부전화 시스템) 예산 증액 및 사업확대	162
85	경로당 이용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예산 제공	162	

순서	영역	정책명	page
86	달서구	대구시 노인복지관 인력기준에 맞는 인력 지원	163
87		어르신이 안전한 달서구 만들기	164
88		신규 노인일자리 창업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기능 확장	164
89		증가하는 베이비부머세대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166
90		달서구립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	167
91		출산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인식개선	168
92		어린이집 보육시간과 보육료의 현실화	168
93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169
94		사회복지분야 청년일자리 대책	169
95		도심형 종합복지센터 설치	170
96		사회복지관련 업무 조정 및 사회복지직 확대	171
97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실천	172
98		달서구 현황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확대	173
99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인 운영비 보조 및 지원 체계 확립	173
10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174
101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174
102		노인장기요양제도 이용 장애인의 돌봄 추가지원 확대	175
103	달성군	아이들의 행복달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77
104		달성의 튼튼한 새싹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 설립	178
105		달성의 밝은 미래를 위한 다사지역 청소년 센터 건립	178
106		함께 꽃피는 달성을 위한 장애인활동서비스지원센터 설립	179
107		글로벌 달성을 위한 다문화회관 건립	180
108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남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181
109		함께 꽃피는 달성을 위한 자원봉사회관 건립	182
1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183





함께 누리는 복지친화도시
대구광역시

| 부. 6·13 지방선거 사회복지 **핵심공약**
Core pledge



Core pledge

1. 대구시민복지 고도화를 위한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 복지공동체 대구를 위한 민간 사회복지 컨트롤타워 건립 필요

대구에는 6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들을 대표하는 30여개의 직능단체와 150여개의 유관기관들이 대구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직능·유관단체(자원봉사·모금기관 등)를 집중 배치하여 단체 간 유기적인 연계 및 협의·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대시민 나눔·자원봉사 활동의 극대화 및 원활한 정보교환과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복지허브 기능을 수행할 대구 시민복지플라자가 필요합니다.

□ 서울 및 주요광역시도 복지플라자 건립 및 건립예정 (시민복지를 위한 복합공간으로서의 복지플라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광역시도에서 복지플라자가 건립되어 운영 중이며, 복지플라자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사회복지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교육센터, 서민들을 위한 복지금융센터 등 시민복지를 위한 복합공간의 기능을 함으로써 시민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충북(2006), 제주(2008), 인천(2008), 전북(2009), 경남(2015), 광주(2015), 대전(2012), 서울(2017), 부산(2019년 완공)

□ 연간 1만명 수준의 사회복지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전용 교육장 부재

대구시민의 복지수준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법정보수교육, 사회복지 직능단체별 직무교육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대구시민복지고도화를 위한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핵심
권약

2. 대구 복지부시장제 도입

- 복지친화도시 대구의 위상에 맞는 지방분권 맞춤형복지 실현



시민의 복지가 모든 시행정을 아우르는 화두가 되는 현재 경제복지, 건강복지, 안전복지, 주거복지, 교통복지, 문화복지, 환경복지, 체육복지, 고용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구시정에 복지 과제 해소를 위한 행정혁신을 위해 [복지부시장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복지부시장의 역할>

1.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굴
2. 복지수요자인 시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
3. 지방분권과 병행한 지역 맞춤형 복지실현의 기틀
4. 늘어나는 복지정책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5. 민간 복지자원들과의 효과적인 협치 창구 역할

요청합니다

- 1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복지부시장 체계로 편제
- 2 복지부시장실 산하 시민사회 및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시민복지갈등조정위원회 설치 - 시민복지증진
- 3 지역맞춤형 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협치 창구 - 민간전문가 임용
- 4 보건복지국 및 여성정책관실의 개방형 직위제(사무관) 실시
- 5 복지부서에 전문가(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등) 전진배치(50%이상)
- 5 기획실, 홍보실, 예산실, 감사실, 건강정책과 등에 복지전문가 배치
- 6 시청 건강정책과와 각구 보건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배치
- 7 복지현장과의 간담회 정례화 - 시장. 시의회. 교육감. 7개구(군)

핵심
권약

3.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법적, 심리적 지원체계 마련



- 안전 및 인권보호, 감정노동치유를 위한 장치 마련

□ 대구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6,000여명이며, 현재 이들의 상당수는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60%이상이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이 있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은 폭언(30.8%), 협박(11.7%), 스토킹(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29.5%가 업무상 재해경험이 있었으나, 종사자 대부분(92.9%)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주로 개인비용 처리(88.0%)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종사자들은 감정노동과다로 인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 스트레스 대응방법은 지인과의 대화, 그냥참음, 음주 등 소극적인 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신변 안전의 위험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법적, 심리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요청합니다

- 1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해보험 및 손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 2 폭력예방 및 대응매뉴얼 개발도입 및 정기 의무교육 시행
- 3 폭력피해 종사자를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및 비용 지원
- 4 감정노동 치유를 위한 년1회 심리검사 의무 시행
- 5 감정노동 치유를 위한 안식휴가 및 힐링 프로그램 추진
- 6 종사자의 법률자문 및 심리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심리지원에 대한 세부내용 추가



함께 누리는 복지친화도시
대구광역시

|| 부. 6·13 지방선거 사회복지 **분야별 공약**
Sector pledge



Sector pledge



공약 1 대구형 SOS 복지안전벨트 구축

현행법과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은 저소득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함은 물론,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판단 및 지원을 통하여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의 맞춤형 긴급복지 제도가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시행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위기에 처한 3,460세대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총 25억3,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인천형 긴급복지제도 &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비교

- 소득,재산(일반,금융),위기사유기준 외에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제거주)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함

[소득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254,079	2,135,323	2,762,363	3,389,402	4,016,441	4,643,480
sos복지안전벨트 (중위소득 85%)	1,421,289	2,420,032	3,130,678	3,841,322	4,551,966	5,262,611

[재산기준]

사업명	일반재산	금융재산
긴급복지	13,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sos복지안전벨트	17,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요청합니다

- 1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의 극단적 선택 예방 및 위기 상황 신속 지원을 위한 “대구형 SOS 복지안전벨트” 구축

공약 2 건강취약지역 마을건강센터 설치

건강격차가 심한 지역보건취약지역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보건소와 거리가 멀거나 의료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작은보건소로서 “마을건강센터”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 업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산광역시 마을건강센터 운영	10개소	22개소 (12개소)	35개소 (13개소)	50개소 (15개소)

요청합니다

1 보건취약지역의 마을건강센터 개소 및 운영

(1개소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4명,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공약 3 저소득 취약계층(차상위자) 빈곤예방 지원

정부재정일자리인 자활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건부수급자가 의무참여자로 되어 있으나, 희망에 따라 일반수급,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는 최저생계비(수급자 기준)와 연동되어 책정되므로 2018년 자활급여(주40시간)는 월 907천원 ~ 1,011천원으로, 최저인건비(주40시간) 월 1,573천원의 57~63% 수준입니다.

의무참여자인 조건부수급자는 생계비 지원으로 낮은 급여를 보충하나, 희망참여자인 차상위자는 최저인건비의 57~63% 수준으로 생계유지가 힘들며, 그로 인해 차상위자의 정부재정일자리 참여가 수급자로 전락할 위험요소가 됩니다. 현재 대구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는 약 750명이며, 이중 차상위자는 약 15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20% 정도입니다.

이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자에게 최저인건비와 자활급여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부재정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제도를 기반으로 안정적 삶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자에게 2018년 최저인건비와 자활급여 차액 지원



공약 4 자활사업을 위한 필수적 공간 지원

지역자활센터의 필수적 공간 확보를 통해 공공부조 전달체계와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인프라로서 기능을 강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말 현재 9개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중에서 5곳이 무상임대로 나머지 4곳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형태인 유상임대에 속하여 있으며, 무상임대 1곳은 50년 이상 된 노후건물입니다.

대부분 상가 건물을 활용하여 유상임대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많은 비용의 월임대료를 보조금으로 감당해야하는 현실에 있으며, 또한 옛 주민센터를 무상임대 형태로 사용하는 기관은 매해 늘어나는 수리비를 보조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대구시에서 자활기금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나, 월임대료 받기를 희망하는 임대인의 요구에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역자활센터는 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센터별 평균 250명 이상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과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간적인 충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1 자활사업을 위한 필수적 공간 지원 보장

- ▶ 필수적 공간 확보(상담실과 교육장, 사무실 등 최소한의 공간 약 330㎡)
 - 시설비(운영비) 지원 : 년 100,000천원
 - 필수적 공간마련이 가능한 국.공유지 무상임대 지원

공약 5 대구시민교육센터 설치

대구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자발적 시민, 책임지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문화를 개선 발전하고자 함

자원봉사를 넘어서서 사회변화에 관심을 갖고 살기좋은 대구를 위한 공동체성 함양, 전략적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구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365자원봉사시스템 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 586,258명(2018.2월말 기준)이며 대구시 인구 2,474,309명의 23.7%입니다.

국가 전반의 흐름으로 시민 책임과 권리가 중요해지고 참여하는 시민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시민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시민교육, 자원봉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체험교육장으로 서 전연령의 맞춤형 교육으로 민주사회에서 참여자로서 시민인식이 성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자원봉사 시민교육'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자발적 시민, 책임지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문화를 개선, 발전하고자 하며, 자원봉사를 넘어서서 사회변화에 관심을 갖고 살기좋은 대구를 위한 공동체성 함양, 전략적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구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대구시민교육센터의 주요기능

- 우리마을 맵핑을 통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교육
- 문제해결찾기
- 대구시민성교육 과정 운영
- 대구시민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 보급

요청합니다

1 대구시민교육센터 위한 지원방안 수립

- ▶ 전체필요예산 : 약330,000천원
 - 교재개발 및 보급 : 50,000천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 : 30,000천원
 - 교육센터 구축비 : 200,000천원
 - 상시운영근로자 : 50,000천원
- ▶ 공간확보 : 시공유재산 활용하여 100명, 5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 활용
- ▶ 운영기관 :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구.군과 연대하여 사업실시)

공약 6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인프라 확충

자원봉사업무는 지방사무로 지역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차이가 나며, 현재, 대구자원봉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성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있으나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요구를 해결하기에는 지원업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활용에 대해 시공영 공간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다양한 시민이용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욕구(교육실, 자원봉사회의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를 충족할 공간이 없는 현실이며 대부분이 사무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운영규정에 명시된 정규직원 충족율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인건비기준 이행을 또한 낮은 현실입니다.

이에 시민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적인 물리적 공간,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대구자원봉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요청합니다

1 자원봉사센터 주요 인프라 확충

- 공간 확보(이용시설로서 주차장, 강의실, 상담실 등 무상이용)
- 인력 확보(센터별 전문인력 법적기준에 자원봉사 업무는 지방자치사무로서 지역의 관심도에 따라 인프라의 차이가 많이 남)
- 전체필요예산 : 약314,400,000원 확보
 - 인건비-종사자수당(62명*12개월*100,000원) : 74,400,000원
 - 8명*30,000천원=240,000,000원



공약 7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대구시의 노인 단독가구는 90,000명, 노인 4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며, 독거노인의 87.9%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전체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70%를 차지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제공에도 돌봄 수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는 반면 제공되는 독거노인 대상 서비스는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제공 기관, 관련 행정체계가 흩어져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 1 독거노인지원조례 제정
- 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 2019년 설치 운영예산 확보
 - 2018년 운영 기관 선정
- 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역할 정립
 - 독거노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 독거노인 관련 서비스 제공 상황 모니터링
 - 관련 행정체계와 소통 창구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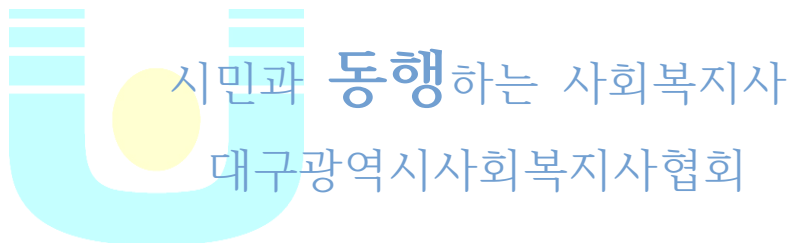


공약 8 베이비부머 지원계획 수립

대구시의 베이비부머 인구는 37만2천명으로 대구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정책수립이나 행정적인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지난 3기 사회복지계획에 대구시 핵심과제로 인생2모작 행복지원사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행을 위해 타당도 조사를 거쳐 2017년 '50+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타당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 1 베이비부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2 베이비부머 지원 행정체계 구축 : 담당과 또는 담당계 신설
- 3 유형별 지원센터 설치
 - 평생학습 지원센터
 - 고령친화산업 육성센터
 - 귀농귀촌 지원센터
 - 50+ 일자리 지원센터



공약 9 독거노인 공동생활주택 운영

급격하게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의 의식주와 고독사 등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지만 일반세대 노인은 방치되는 수준으로,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복지주택은 서울, 경기지역에 국한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반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단지는 수요와 욕구에 기반하여 필요한 상황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주택 운영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1 대구시 단독주택 또는 저상층 상가 매입
- 2 개보수와 기능보강사업으로 독거노인이 살기좋은 대구 홍보
- 3 저단가 보증금과 임대료 설정으로 보편적 주거복지주택 확보
- 4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일반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 제공
- 5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대구시만의 랜드마크 계획
- 6 독거노인공동생활단지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 7 독거노인공동생활의 지원과 관리를 위한 복지기관 매칭
- 8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 매칭
- 9 공동주택운영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필요



함께 누리는
복지친화도시 대구광역시

공약10 등급외자 노인야간보호서비스를 위한 기억학교 기능 확대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등급외자 노인들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18년 기준, 14개소의 기억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현장에서의 시대적 흐름은 야간보호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요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등급외자 노인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새로운 인프라확충과 추가적인 예산투입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억학교의 야간보호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정 기억학교 현황)

- 삼덕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진명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진명복지재단)
- 성덕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성덕복지재단)
- 샬롬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단법인 샬롬)
- 참좋은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
- 효성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효성복지재단)
- 행복누리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 마야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마야의집)
- 청인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청인재단)
- 상록수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
- 대구샘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성산복지재단)
- 수경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 효경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단법인 효경)
- 보림기억학교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보림)

요청합니다

- 1 등급외자 노인에 대한 서비스기회 및 선택권 부여의 폭 확장
- 2 주,야간보호서비스 통합관리로 보호자와 가족들의 편의 제공
- 3 현, 14개소 기억학교의 야간보호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기능 강화
- 4 현, 기억학교 서비스 대상자 우선 야간보호 서비스 시행
- 5 야간보호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가 운영보조금 확보
- 6 야간보호서비스 인력충원 및 소요 운영비 계상
- 7 대구광역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차별화 전개 가능

공약11 기억학교의 [대구형 치매관리사업 모델] 고유사업 인정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대구만의 특화된 ‘기억학교’ 사업은 처음 4개소에서 현재 12개소, 연내에 14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억학교’ 사업이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지기능지원등급’ 신설로 경증치매자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확대해 이용대상자 및 사업예산의 중복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 향상 및 보호자들의 높은 만족도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기억학교를 경증치매노인 대상에서 경도인지장애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입소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대구를 치매노인보호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외부펀드 확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역의 우수한 특화사업으로 고유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구형 치매관리사업 모델’ 고유의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시를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1 ‘대구형 치매관리사업 모델’로의 고유화 사업으로의 인정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차별성 인정하고 고유의 독립적 사업임을 인정
- ▶ 입소기준 완화 및 경도인지장애노인으로 대상 확대
- ▶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 ▶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지원
- ▶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밝은 세상 복지대구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공약12 고령친화도시 대구 만들기

대구 is 이미 지난 2017년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7개 광역 시도 중 2번째로 높은 고령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노후를 위한 명확한 아젠더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의 균형감 있는 발전은 물론, 원활한 세대 소통, 노후의 안전함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믿고 삶을 의지 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준 요구되고 있기에 WHO 국제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 가입이라는 아젠더를 제시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 정읍, 수원, 부산, 제주가 가입 중입니다.

요청합니다

- 1 WHO 국제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 가입을 2019년 제4기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핵심과제로 선정
- 2 시민중심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및 유지,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
- 3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예산 확보



공약13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고령화 사회에서 절실하게 대두되는 베이비부머세대 문제와 노인빈곤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시니어스타가게 발굴사업

- 지역 내 시니어가 운영하는 가게를 스토리텔링
- 시니어클럽 등과 협력하여 마케팅 등 지원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장형사업단 100개 설치

- 현재 8개구군 시장형사업단 68개
- (가칭)대구일하는노인네트워크 -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등

3 대구시 시장형사업단 창업지원예산의 증액

- 현재 사업공모를 통해 1억8천만원 지원
- 창업지원 개소당 5천만원 3개소(1억5천만원)
- 교육지원 개소당 1천만원 3개소(3천만원)
- 3억원으로 확대하여 연간 5개소 창업 4년간 20개 창업



공약14 치매예방 수어교실 시범사업 운영

○ 외국어 교육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 교육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 보고되고 있으며, 수어는 한국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청인: 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다른 언어로써(한국수화언어법 2016년 2월 3일 제정, 8월 4일 시행)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손을 움직여 뇌를 자극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어는 음성언어와 달리 손으로 표현합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을 하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며,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경우 치매율이 현저히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어는 언어입니다. 때문에 책을 보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실생활에 사용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실습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배우는 과정과 배운 후 사용하는 대상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또다른 세계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청합니다

- 1 대구지역 노인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 대상 수어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
- 2 실생활 수어회화, 수어노래, 농아노인과의 만남의 날 등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공약15 치매주간보호시설 실종예방 감지기 설치 의무화

치매 어르신 주간보호시설 어르신 실종 예방 관련 시스템 부족으로 주간보호 시설에서 어르신 실종사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주간보호센터 치매어르신 배회 감지기능 시스템 설치 의무화 도입
(배회 감지기 개당 150만원 소요)



대구 지역에는 8개의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이 있고,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관리사가 404명이 대구전지역 독거노인 10,525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사업 전반의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서비스관리자)는 총 17명이 활동 중입니다.

생활관리사는 대부분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의 여성들로 이루어져있으며, 매일 담당하고 있는 독거노인 25~30명(평균) 유선 안부 및 직접 방문 안부 확인과 어르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후원금품을 전달하는 등 ‘기관’과 ‘독거노인’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혹서기/혹한기에는 밤낮없이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서비스관리자)는 생활관리사의 업무총괄(주간 및 월간 호의, 근태관리, 교육, 업무관리, 모니터링 등)과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서류 업무, 고위험군 대상자 사례관리, 혹서기/혹한기, 명절 동안의 독거노인 안전 확인 실적 취합 및 시군구 보고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관리자는 기본급 1,597,000원과 대구광역시 처우개선 200,000원을 지원받아 1,797,000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도 없으며 호봉 인정도 없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요청합니다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 ▶ 2018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예산 편성
-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

공약17 대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인력기준 변경

대구지역 재가노인지원센터 인력현황은 시설장1명, 사회복지사1명, 사무원1명으로 현재 대구지역 48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중점관리 대상자 120명을 포함하여 전체 140명의 재가어르신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국가 책임제라는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사전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종사자 수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 인력의 추가 배치가 매우 필요합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인력 기준>

시도	종사자계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상근직원	유급봉사자	대상자계	중점대상자	일반대상자
대구시	3	1	1	1			140	120	20
서울시	4	1	2	1			100	50	50
경기도	5	1	1	1		2	80	40	40
경북	4	1	2	1			100	50	50
경남	5	1	1	1	2		80	50	30
기타	3	1	1	1			80	50	30

또한 재가노인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기준이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까지 한정되어 있어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을 위한 조건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승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관리의 몰입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급여 기준>

직위	지원기준	내용
시설장	부장, 과장	사회복지경력 만17년 이상 근무 시 부장급 급여 지원 가능(자치단체 협의)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만3년 이상 근무 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적용
사무원	1~4급	4급 만4년 이상 근무 시 3급으로 당연 적용

요청합니다

- 1 재가노인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인력의 추가 배치
- 2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을 위해 인건비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승진의 기회 제공

공약18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년 경과, 노인요양시설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종사자 처우 개선 목적으로 종사자 수당(18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 ‘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보험수가로 운영되기에 타 시도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 수당의 지원금액과 대상을 축소하여 2017년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 그간 노인요양시설 급증에 따라 종사자 수당 미지원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에 종사자수당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및 장기근속장려금(‘17.10월~) 지급, 종사자 처우 상향으로 인센티브 지원방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2018년 노인요양시설 평가 대비 평가 역량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는 종사자 인센티브로 지원

※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우수기관(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반영)에 한해 운영주체 구분 없이 인센티브 지원 계획

○ 지원 내용 : 인센티브(6만원/인,월)

이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정책지원비 지원과 증액의 필요성이 있음

요청합니다

- 1 향후 지속적인 정책지원비 지원
- 2 현 6만원 정책지원비 향후 증액 지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노인요양시설은 101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154개소, 주야간보호 206개소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시설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마다 2교대, 3교대, 4교대 등의 가지각색 근무형태로 급여 및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한 시설별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통합적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표준근무 모델의 정책적 제시를 통해 모든 문제가 개선되어 질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청합니다

- 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안정화 전문화를 위한 통합근무시스템 구축 및 표준근무 모델 제시



밝은 세상 복지대구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공약20 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강화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로 전환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거주시설 등에서 자립의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나 제반시스템을 마련해 놓지 않는 상황에서 자립에 대한 의지만으로 자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장애특성상 상대적 자립관점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형태는 없는 실정입니다.

※ 2018년 자립생활가정(2,605,000천원) 및 체험홈(899,253천원) 각 10개소, 주거시설 퇴소 자립정착금 300,000천원(시민마을 거주장애인 210,000원),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150,000천원

요청합니다

- 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거주시설구조변환, 자립정착금, 주택개조 등 물리적환경과 제반시스템 확대)
- ②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단계적 자립정착금 인상
- ③ 자립생활 준비 및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가정 및 체험홈 단계적 확충
- ④ 재가장애인 특성에 맞는 주택개조지원금 단계적 인상

Barrier Free지역 지정 운영
-공중시설 접근성 및 안정성 확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시행 중입니다.

2018. 1 현재 대구시 99개소가 인증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이 완공된 본인증은 31개소 밖에 없으며 대부분 학교 등 교육시설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근 장애인복지의 탈시설화 경향에 따라 주야간 장애인 당사자의 통행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만큼 Barrier Free 지역 지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① **Daegu Barrier Free 지역 지정 운영**
 (대구의 대표적인 공적 공간, 공공건물, 도로 등 단계별 지정)
- ② **보호구역 내 실효적인 법적보호 확대**
 (관련법상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을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은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직업재활시설까지 포함)



공약22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마련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현재 각 관할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장애인가족 지원조례가 개정되어 있으며, 대구시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 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장애인가족에 관한 최소한의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 가족이 겪는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정신적 장애’, 즉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은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적용도 이루어져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배제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감으로 인해 도움 요청 등에 매우 소극적이며, 가족의 해체와 가족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정신장애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인식개선과 가족에 대한 개별 가족단위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마련**
(지자체 수준의 책무성을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규정)
- 2 정신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공약23 발달장애인 지역사회통합기반 구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적인 지역사회통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요청합니다

- 1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마련
- 2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마련
- 3 발달장애인가정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바우처) 확대
- 4 지역사회재활시설(이용시설) 확대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확대, 광역형장애인복지관 건립
- 5 장애인직업재활 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 실제적인 직업재활시설생산품 관련 기술습득, 직업 전 훈련지원 등
- 6 장애인 평생 설계지원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목표와 실천과제 정립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함께 누리는
복지친화도시 대구광역시

공약2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기관 확대

2018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개소

-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 학령기 이후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주5일 정규반(5개반, 총 정원 30명), 주 2~3일 단과반(4개반 48명)
- 교육내용 : 언어능력 향상교육, 자립생활기술교육, 특수체육, 사회력 향상 교육, 문화예술 교육)
- 이용료 월 17만원(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50% 감면), 중식비 8만원

요청합니다

- 1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공정한 교육기회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2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폭적인 확대
- 3 교육기관과 국가 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통해서 해결



공약25 중증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에게 맞춤형 전환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ex) 서울의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 전환서비스 체계와 자립생활주택운영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주택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음
-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자립준비와 시설퇴소시 지원되는 내용을 소개, 사후관리 및 위기사례에 대한 공동지원
-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입주자 자립지원, 자립생활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임

요청합니다

1 대구 중증장애인전환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확대

- 1개소 × 150,000천원(인건비 3명기준)
- 1개소 × 20,000천원(운영비)



공약26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대구광역시에서 장애인 나드리콜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대기시간이 30분 이상이며, 저상버스 또한 6대 광역시 가운데 최대(518대)이나 대구시 전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34%에 불과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저상버스 추가도입을 통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대
- 2 장애인 이용률 조사를 통해서 다수이용 노선에 투입 확대
- 3 저상버스 단계적인 확충으로 임기내 저상버스비율 100% 달성
(100% 달성 이후 저상버스만 도입을 전제)



공약27 장애학생 대상 계절학교 운영

대부분의 학령기 장애아동 부모들은 학기마다 돌아오는 방학이면 일시 보호 및 교육 기관의 부족으로 장애아동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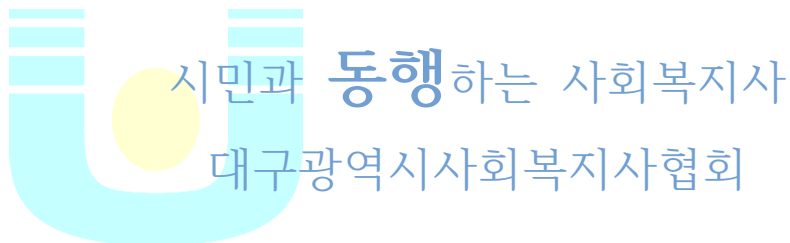
(현재 부산, 대전, 강원도, 충남 등에서 각 1억여만원 등 운영 중)

- 대구지역은 달서구청에서 사랑의 토요일학교 운영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계절학교 운영

요청합니다

1 방학기간 내 계절학교를 지역 장애인복지관련 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방학기간 (하절기, 동절기 2회)
- 구,군별 1개소 이상(시50%+구50% 부담)
- 1개소 20명 기준(8개 구군* 20명 = 160명)
- 1개소당 연 50,000천원 × 8개소 = 400,000천원



공약28 장애인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3조(단체의 보호·육성)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보호 및 육성을 명하고 있으며, 대전, 부산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내에는 대구시장장애인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전문적인 장애인복지를 실현하는 단체들이 많으며 이들의 단체들은 복지서비스, 인권옹호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들을 당사자의 욕구에 맞춰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대구시 장애인 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2 장애인복지사업 시행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 및 재정지원



함께 누리는 복지친화도시
대구광역시

공약29 장애인 복지시설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및 기능보강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지진 등의 재난상황 발생시 상대적으로 대피에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노후된 시설들이 많으며, 대구광역시 또는 구청에서 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기관내 안전교육(응급상황 대처, 대피 등)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안전은 점검 및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장애인 복지시설 건축물의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기능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1 장애인 복지시설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및 기능보강



공약30 구별 장애인 운동처방센터 및 건강운동실 개소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운동처방에 따른 전문적인 재활운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비만 등 다양한 성인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나 보건소, 재활병원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건강관련 전문기관이나 운동시설이 설치된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장애인 운동처방센터 및 건강운동실 주요기능

- 운동처방에 따른 전문적인 재활운동 및 건강관리
- 장애인의 비만 등 성인병 예방
- 대구지역 장애인 건강 및 운동관련 연구 거점 기관

요청합니다

- 1 각 구별 운동처방센터 및 건강운동실 개소(확충)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개소 비용 및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공약3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및 가족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

대구광역시 등록장애인은 117천여명으로 추정장애인은 이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유형 및 특성,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일관된 정책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들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애 유형이 15개가 되는 만큼 각 장애유형에 맞는 지역별 특성화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1 대구광역시(또는 구)만의 특색 있는 장애인 정책 수립

(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필요)



공약32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장애인(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령기를 지나면 자립생활로 연결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공과, 직업훈련센터,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등으로 순환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체험홈, 자립생활지원센터, 평생교육지원센터, 직업훈련센터 등 다양한 자립관련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관들을 응집하여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또는 협의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공동협의체 주요기능

- 장애인 자립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
- 장애인 자립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 건의

요청합니다

1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방안 수립 및 지원



1. 정신재활시설의 필요성 인식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소요 : 연간 8.3조원/
 - 나. 국가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수준 : 14%, 54.5%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다. 대구지역 정신재활시설의 사업평가
 - 43%(425명 중 181명)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라. 정신질환자의 입원 위주의 치료에서 지역사회로의 유인구조 마련
2.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강화 절실
 - 대구지역 16개소(5%)가 운영, 7%(6,025명 중 425명)만 시설 이용
3. 현실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한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 가. 입소·이용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지원금액 권고 기준 미달
 - 1)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대비 대구시 지원 현황

구분(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	대구시	비율
관리운영비	입소	896,000원	532,000원	59%
	이용	613,000원		87%
프로그램운영비		294,000원	216,000원	73%
 - 2) 제한적인 전문인력 역량강화활동 및 전반적인 정신건강사업의 위축야기
 - 나. 시설 유형별 인력(종사자) 지원기준 미달
 - 1) 보건복지부 시설 유형별 지원기준 중 ‘재활활동보조원’은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게 되어있으나 대구는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임
 - 2)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에 대해 낮은 평가
 - 3)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인 정신건강사업 위축 결과 초래함

요청합니다

- 1 정신재활시설의 필요성 인식 및 관심 제고
- 2 정신재활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유형 설치
- 3 입소·이용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지원금액을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으로 상향 조정
- 4 시설 유형별 인력을 법정 직원수 대비 충원(확충)

공약34 탈원화에 따른 정신장애인 주거방안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정신적 장애’, 즉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은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적용도 이루어져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배제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병원, 정신요양원 등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복귀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무연고자, 돌볼 수 있는 가족 부재 등의 사유로 재입원해야만 하는 현실이 있으며, 정신장애인이 갖는 질환의 특성 상 지원시스템 없는 독립생활은 불가능한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시설, 그룹홈 등의 시설과 함께 지원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질환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어 주거 공간에 고립되어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시스템이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 1 탈원화에 따른 정신장애인 주거방안 마련
- 2 재가정신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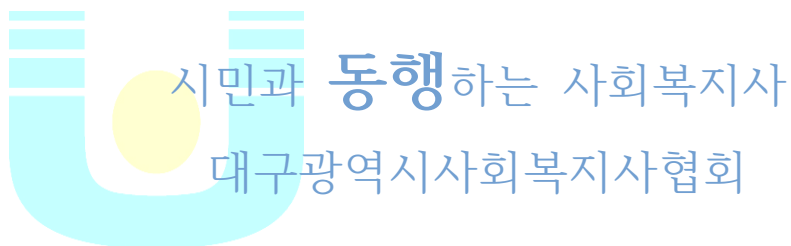
공약3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인력 추가배치

2018년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이 파견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기존 종사자들의 업무를 분배할 수 없고 업무 과중을 줄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 정원 평균 15명에 종사자 수는 3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정원 대비 종사자 수가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될 뿐 더러 이용자 케어와 서비스 제공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에는 대체인력이 아닌 정규인력 배치가 되길 희망합니다.

요청합니다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인력 추가배치



공약36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증액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연간 1천만원, 분기당 250만원의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250만원으로 센터 관리비와 이용자 급식비, 차량지원비, 사회적응훈련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해져있는 비용이 아닌 관리비와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매달 다른 비용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응훈련비와 운영비를 사용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의 시설 만족도를 위하여 운영비 보조금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현실화



함께 누리는 복지친화도시
대구광역시

현재 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인력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과 업무 과다로 직원의 이직, 소진현상이 빈번하고 있기에 최소한 법정 기준에 따른 인력배치 지원이 시급합니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근무자들의 시간외 근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15시간만 지원하고 있어 애로가 크며, 타시설(타 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대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생활시설 등)의 월 40시간 지원과의 현격한 차이로 직업재활시설종사자의 사기 저하와 근무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타시설 종사자와 같은 수준의 시간외 수당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법정 배치인원 준수
- 2 시간외 수당 현실화(월 40시간)를 위한 예산 지원



밝은 세상 복지대구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공약38 대책 없는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 개선

시설의 입소정원이 미달됨에도 소규모화 정책을 사유로 주무관청에서 충원을 허가하지 않아 현장에서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부모들의 원망과 질책을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입소를 불허하는 방식의 소규모화 정책은 입소가 필요한 장애인의 행복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로 대책 없는 소규모화 정책이 국민의 행복과 선택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입소인원 수에 따른 무조건적인 인력지원기준이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키고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소규모화 정책의 구체적 계획, 예산 반영
- 2 소규모화 정책의 세부방침 마련
- 3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종사자 인력 보전



공약39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거주인의 잔여재산 법적 처리절차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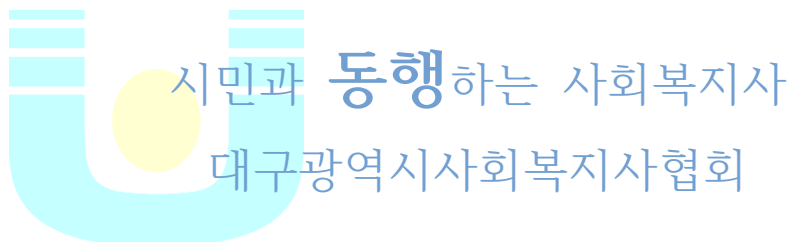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무연고 거주인이 사망할 경우 민법 제1053조에 의거하여 잔여재산에 대한 법적 처리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유품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
- 관련 유산에 대한 이권이 있는지 1~2년 공고
-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유품에 대해 이해관계인(시설 등) 분여 소송 제기

이러한 절차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기엔 법적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며,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처리하기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 1 금액별 처리절차 차등적용, 국고환수 등 무연고 거주인의 잔여재산 법적 처리절차 간소화



공약40 장애인거주시설의 편견개선을 위한 정책마련

몇몇 문제시설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시민단체, 주무관청의 감독행태와 시선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사기의 저하가 심각함. 시설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거주시설의 편견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요청합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의 편견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



공약41 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대구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개 시설은 시설당 평균 2~3대의 통학차량을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나누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노동 강도를 가중시키고 업무스트레스를 높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져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차량운영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추가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자체별 차량 운영비 및 운전기사인건비 지원 비교

대구	차량운영비 지원 없음,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없음. (11인승 이상 : 1대 2곳, 2대 2곳, 13개 시설 3대)
인천	운전기사 인건비 월 150만 지원 (6기관 차량 6대)
울산	차량운영비 20만원씩 지원, 운전기사 인건비 150만원 지원 (8기관)
대전	차량운영비 20만원씩 지원, 운전기사 인건비 1,514,000원
경북	차량운영비 20만원씩 지원, 운전기사 인건비 120만원 지원 (14기관 차량 34대), 2018년 1월부터 상향 조정예정임
경남	- 김해 : 조리사 1호봉의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13기관) - 창원 : 운전기사 인건비 100만원 (6기관)
경기	- 운전기사인건비 150만원
충남	차량 연료비 월 60만원
충북	운전기사 인건비 월 150만원
제주	운전기사 인건비 월 100만원

요청합니다

1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차량운영비 월 20만원, 운전기사 인건비 월 150만원)

공약 42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었으나 장애인건강권법 안에는 장애인의 재활체육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좀더 세밀히 규정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자체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개별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급여적 혜택이 없습니다.

요청합니다

- 1 국민체육센터 활용 등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지원 확대 도모
- 2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확대
- 3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반건강검진비 급여 확대





공약43

모성보호책임도시 대구 선포

- 육아, 가사, 직장생활 병행을 위한 모성보호 지원방안 수립

2017 대구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제공(70%), 유급수유시간 제공(42.6%), 육아휴직(68.4%)로, 종사자 대부분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피해보호시설(50%), 가정폭력보호시설(37.5%), 노숙인시설(34.8%)에서는 종사자들의 1/3이상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70%가 여성근로자이고, 아동기 자녀를 둔 30대 젊은 종사자가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모성보호는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 및 임신·출산을 통한 취업단절, 이직현상, 수입 감소, 비정규직 전환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여성 근로자들이 모성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능한 사회복지전문가인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및 활용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과 모성보호정책 확대 등 육아가사 및 직장생활 양립지원의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 및 관리 강화
- 2 모성 보호를 위한 시설 컨설팅 및 관리 감독 강화
- 3 사회복지종사자의 연가 사용 보장 및 유연 근로제 시행
- 4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지원대상 확대 - 출산 및 육아휴직자 포함
- 5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및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공약44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에 의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신생아 한 명과 산모가 2주 이용시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70만원 사이이며, 시도별 평균요금은 경기도 300여만원, 서울강남인 경우 497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최고, 최저 5개소>

구분	순위	시도	시군구	산후조리원명	이용요금(단위:만원)	
					일반실	특실
최고 금액	1	서울	강남구	A산후조리원	960	2,000
	2	서울	강남구	B산후조리원	780	1,200
	3	서울	강남구	C산후조리원	780	1,200
	4	서울	강남구	D산후조리원	720	1,800
	5	서울	서초구	E산후조리원	700	-
최저 금액	1	전북	정읍시	F산후조리원	70	-
	2	전남	여수시	G산후조리원	70	-
	3	전남	여수시	H산후조리원	80	85
	4	충북	청주시 상당구	I산후조리원	80	95
	5	경남	통영시	J산후조리원	85	90

산후조리원의 고비용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 공공 산후조리원 현황

- 서울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제주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전남 해남종합병원 공공산후조리원 등

요청합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다문화 가정, 중증장애인 산모 등

공약45 구군별 생활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및 운영지원 강화

○ 핵가족화로 약해진 가족돌봄 기능 보완 및 이웃간 돌봄 품앗이 활동지원을 통해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에 의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설치 운영 중입니다.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공동육아 나눔터공간	1	1	1	2	1	3	1	1
가족품앗이 그룹	10	13	9	7	11	17	9	12

○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 가족품앗이 활동참여인원이 2011년 38,325명에서 2017년 기준 624,995명(여성가족부 설문현황)으로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독박육아, 맞벌이가정에게 돌봄장소제공, 놀이프로그램참여, 정보제공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에 있어 기업체 후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지자체 공간이 미확보시 선정의 어려움이 있음.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이후 운영에 있어 인건비, 임대료 및 운영비 확보에 대한 문제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욕구는 높으나 설치 확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더불어 사업지원금지원금 확대 및 인건비, 운영비(시설비포함)를 지원 확대하는 방안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1 구군별 생활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및 운영지원 강화

- ▶ 사업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 구군별 생활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중장기 계획수립 시행
- ▶ 수요자 맞춤형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기금운용 및 사업자금지원

공약46 다문화여성의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다문화여성의 취업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다문화센터, 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여성일자리센터 등 여러 기관을 마련해 놓았지만 다문화여성에게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일하기센터가 대구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언어능력이나 학력수준으로는 전문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여성의 현실적인 자립지원의 방안모색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1 대구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욕구조사(주기적)에 기반한 맞춤형 특화 자립지원 환경조성(부설 다문화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 2 다문화여성 프로그램 참여 기회 강화
(공연/영화 할인혜택 기준 상향, 다양한 사용처 발굴 등)



공약47 다문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공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2012.12.31.)에 의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제시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내 사회복지현장의 동일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관할부처와 시설유형별 상이한 보수체계로 인한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과 더불어 보조금 지원방식에 있어 포괄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경력직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차별지급 등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며,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독립된 센터 의무 확보 및 운영지원
- 2 다문화 특화사업(다문화사례관리,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코치) 종사자의 임금 및 운영비 현실화
 - 특수 전문인력 현장이탈 및 서비스 질 저하 예방을 위한 연차별 임금 수준을 고려한 수당(시비) 지급
 - 운영(사업)비의 현실적인 예산지원을 위한 시비 추가 확보
- 3 다문화 영역 종사자의 처우향상 및 단일보수체계 마련
 - 근거법률 :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12.05)
 - 사회복지시설 단일보수 체계마련 및 사회복지시설 간 임금의 형평성(소관부처, 시설종별 격차 해소) 지원예산확보, 시행
 - 종사자의 처우수준의 향상 및 적정성(시비 시간외 수당 신설 등 제수당, 복리후생) 지원 예산 확보 및 시행
 - 질 높은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시비 확보, 지원(차량,시설 개보수)

공약48 다문화 가족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비 지원

다문화가족 중 엄마의 한국어 구사가 미흡해 적절한 언어자극 및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자녀의 언어발달지연 및 취학 후 학교 부적응이 우려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언어발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받은 아동은 102명에 불과합니다.

대구시 다문화가족 자녀 6,423명 중 미취학 아동이 4,894명인 것을 감안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구시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6,423명

(2015.기준/단위:명)

계	만8세이하 ※ 지원대상 아동	만9세 ~ 만12세	만13세 ~ 만15세	만16세 ~ 만18세
6,423	4,894	911	384	23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 102명

(2018.3.기준/단위:명)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102명	20	10	10	28	10	12	12

따라서 경제형편상 검사 및 치료비 부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달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과 검사 후 언어 및 발달장애 판정에 따른 치료비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1 다문화가족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예산확보 : 발달장애 검사비 및 치료비 확보
- 서비스 질적 향상 :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질 향상

공약49 시설 운영비 현실화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운영비 지원 기준이 입소 정원 기준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지원됨으로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입소자의 고민, 욕구, 자녀교육문제 등에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나 전문 상담직원이 없으며, 관리인 경우 시설당 1명 배치로 야간 교대근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가이드라인 현실화 및 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생활자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시설 기본운영비 지원 및 운영비 가이드라인 준수
- 2 생활자 상담 전담인력 배치 및 관리인 증원



공약50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미혼모자가 복지시설을 나갈 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지방정부는 서울(400만~500만원), 광주(500만원), 울산(200만원)정도입니다.

대구 미혼모자 복지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후원모금을 통해 자립지원금을 마련하고 있기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미혼모자 복지시설은 가전제품 및 생필품이 구비가 되어 지원하고 있지만 퇴소이후 모자원을 가거나 자립을 할 경우 모든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므로 퇴소 이후 드는 비용이 많습니다.

대구지역 모자원은 현재 퇴소자 자립지원금으로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모자원 또한 미혼모가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어 모자원과의 차별이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 1 대구지역 미혼모자 복지시설 퇴소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1세대당 500만원 지원



대구(북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주거, 경제, 생활, 가족 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실태를 알 수 있는 현황 자료는 2011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가 가장 최근 연구자료인 상황에서 변화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생활실태,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지역에 중도입국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일반현황(거주인원 수, 연령별 및 성별 분포 등)의 기초자료가 없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무자의 경험적 근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1 5년 단위의 대구지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의 일반현황 외에도 주거상황, 경제상황, 취업상황, 자녀양육 실태, 건강실태, 보건의료 이용현황, 결혼생활과 가족생활, 사회생활, 삶의 만족도 등 포괄적인 내용 포함 되어야 하며 중도입국자녀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함.



밝은 세상 복지대구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공약52 대구시민 복지기움(Keyum)센터 건립

복지와 문화가 시행정의 가장 중요한 시민의 욕구가 되는 현재 어린이 회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대구시의 복지와 문화를 확장하고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복지와 문화가 융합된 기능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사회복지사 배치 - 아동복지프로그램 및 교육복지사업 개발 보급
- 2 초중학교 교육복지실,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기관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3 민간복지전문가 기용 - 관장 또는 새로운 직제 도입
- 4 소극적인 운영방식에서 적극적인 활용방식으로 운영체계 변화
- 5 아이들 소풍이나 놀이터로 전략한 회관이미지 변화 필요



대구지역에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매년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에 비해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의 아동학대정책은 사후대처적인 정책이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사후 관리해야 하는 누적 사례가 기관 당 500건 이상이 되는 상황이라 질적인 관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부모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통해 획기적으로 아동학대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며, 또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여 플랫폼 형태의 복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제작(부모교육, 아동교육)

- 접근성 문제 해결 및 집체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형태의 교육 콘텐츠 제작
- 부모교육(자녀이해, 분노조절, 양육기술, 기타 상담과 관련된 내용) 및 아동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

2 플랫폼 교육강사 양성 및 학교 파견(아동교육)

- 플랫폼 교육의 교육효과 확인 및 향상을 위한 플랫폼(플랫폼에서 받은 교육을 확인하는 교육 프로그램)강사를 양성하여 일선 학교(초, 중학교)로 파견 후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한 확인 프로그램 진행

공약54 아동생활시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정책마련

2017년 8월 기준, 아동생활시설 생활아동 732명중 81명(11%)의 아동이 경계선 지능아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애아동도 5% 수준으로 전체지능 71점~84점에 속하는 경계선아동의 인지,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발달을 돕는 전문인력 투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서울 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시행중인 경계선지능아동서비스를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호동원에서 진행하였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이에 시설 내 단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 경계선지능아동들을 넘어 대구시 모든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지원되기 위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정책마련이 절실합니다.

요청합니다

- 1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수한 보호,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
- 2 방임, 학대,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의 시설 입소율 증가에 따른 기능성 생활관 운영 지원
- 3 전문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내 심리치료 및 상담실 현실화 지원
- 4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수한 보호,치료 대상 아동을 위한 서비스 거점 시설 운영 지원

공약55 아동친화도시 대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지 25년이 지났으나 아직 아동 권리에 대한 보장은 미진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행복이라는 기조 아래, 보건복지부(2015)에서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라는 비전으로 아동 행복감을 증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수준까지 도달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원칙을 정착시키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생활환경, 특히 가장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의 생활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행동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아동정책이 지역사회에 잘 반영되어 실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아동권리를 위한 홍보정책 조례안 설치
- 2 학교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아동권리교육 실시
- 3 아동권리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의 보호안전망 구축
- 4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지역의 아동보호수당 지급
- 5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출산장려정책강화로 인한 출산지원정책예산증액
- 6 아동의 성장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구축과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구성체계가 필요함
- 7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보건체계 구축에 연계망 구축을 통한 전문가 집단 구성
- 8 사회복지기관과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통합연계망 구축에 아동청소년 관계자들의 사례관리팀 구성

공약56 시설아동 (예능)학습지원비 지급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자녀나 학대아동이 입소하는 시설의 아동들은 입소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고 학교생활에서도 인정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으나 현재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초등학생 1인당 매월 50,000원의 예능학습비가 전부입니다.

이에 예능학습비를 고등학생까지 지원하여 아동들의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 1 학습지원비 고등학생까지 전 시설 아동에게 확대 지원



함께 누리는 복지친화도시
대구광역시

공약57 기초단체 단위의 청년지원센터 설치

° 한국의 니트족 증가 :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학업중단 예방센터 센터장) 선임연구위원의 ‘한국의 니트(NEET) 청소년 규모 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무업 청소년은 147만 9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 대구의 청년정책의 현주소 :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의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이 기초단체 단위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구는 2016년부터 광역 단위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정서적 물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참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도 정보력이 뛰어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해 온 일부 대상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고 분석되며, 이는 청년사업 시행도 늦어졌고 사업내용도 뒤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요청합니다

- 1 기초단체단위의 성인이행기 조례제정과 청년센터를 설립 운영
(지역 청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공약58 청소년 거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설치

청소년 인구 대비 청소년 시설 부족 지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설치를 통해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하여야 합니다.

대구지역 청소년(15세~24세)은 총 323,259명으로 대구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을 즐길 곳이 없어 대부분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청소년 범죄 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 각 8개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형식적 기관의 틀은 갖추었으나, 최근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지역과 형성된 지 오래된 지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접근성이 지극히 낮은 편입니다.

각 거점 별 청소년이 가볍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분소를 추가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기능

- 청소년 상담 및 복지 강화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강화를 통한 위기청소년 발굴 및 개입
-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효율 극대화
-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성을 통한 청소년보호 강화

요청합니다

1 청소년인구 다수가 거주한 지역(수성구 시지지역, 동구 혁신도시, 북구 칠곡 지구, 달성군 다사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분소 설치

- ▶ 개소비용 : 지역 내 청소년 이용 시설 활용
- ▶ 유지비용 : 청소년 이용 요금 활용
- ▶ 제반경비 : 여성가족부·대구시·구군 예산 확보
- ▶ 공간확보 : 대구시 및 각 구군 지자체 소유 건물 확보

공약59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사” 배치 사업

쉼터 입소 청소년 중 우울증, 정신분열, 과잉행동장애, 지적장애 등 심리, 정신, 인지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가 주로 근무하고 있어서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 등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입소하였을 경우 대처가 어렵고, 가정 복귀 및 병원 연계가 힘든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일시 및 단기, 중장기 쉼터에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쉼터 예산 구조가 인건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상담사 채용에 따른 쉼터의 예산 부담이 입소 및 이용청소년의 지원서비스 축소와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타 청소년시설 및 기관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동반자 등 전문 인력이 별도의 사업으로 배치 지원되는 등 기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사 주요 역할

- 가정 밖 청소년의 정신 및 심신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 및 평가
-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 상담 정서적, 성격적, 행동적 문제를 해결

요청합니다

1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사 배치 지원

공약6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행복권 추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1에 의거 아동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아동시설에는 2세까지 아동 2명당 1명, 3~6세까지 아동 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의 2교대 생활지도원을 두게 되어 있으나 대구시의 재정형편상 정원대비 약66%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아동과 가장 밀접한 생활지도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게 되고 연차휴가조차 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무의욕 저하와 사기저하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더라도 생활지도원들이 연차휴가라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19개 생활시설당 1명의 생활지도원을 충원하여 아동과 같이 생활하는 생활지도원들이 밝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함.

▶ 전체필요예산: 3호봉 생활지도원 19명 인건비: 618백만원/년간

요청합니다

-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및 인력 추가 배치
(시설당 1명의 생활지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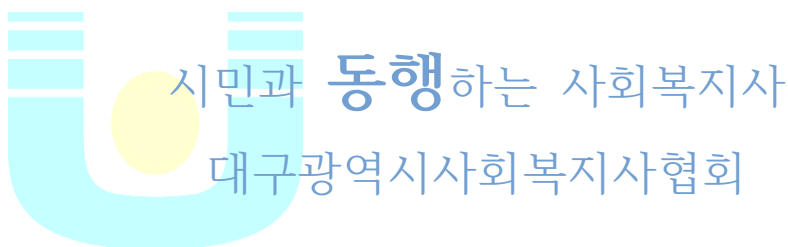
공약61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파견

어느 지역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만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며 편리 상 위탁급식을 실시하던 중 다시 직접 조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일이 잦은 현황입니다.

각 구의 시니어어르신들이 파견되어 겨우 운영을 하고 있으나 파견된 어르신들의 연세가 65세 이상이라 아동들이 좋아하는 현대식의 영양가 높은 조리를 제공하기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지역자활협회와 연계한 급식 제공 시스템 정비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소 젊은 급식조리사 파견)



공약62 동네 놀이 박물관 설치

대구지역의 경우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 몇 개만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놀이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져 인근 지역의 아동들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에 중독되어 함께 있어도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어도 놀이문화를 제공해주는 공간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1 동네 놀이 박물관 설치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부지확보 : 동네의 빈 집이나 건물,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빈 교실 등

전체필요예산 :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설치되는 수에 따라)

제반경비 대구시에서 연차별 지원



공약63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책 마련

매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의 아동들과 장애 아동들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통합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 입장이나 현실은 장애 아동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기에는 학습 수준이나 사회화 수준에서 차이가 나며 또 정서적 어려움도 동반하여 이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진행 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은 만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아동 2~3인당 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어 아동을 위한 세밀한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까지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 아동이 등록할 경우 이 시기까지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는 입장임에도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장애 아동까지 수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비장애 아동과 통합 교육을 시키고 사회화 훈련을 시키기에 지역아동센터만한 기관을 찾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경계선 장애 아동이나 지적 장애 3급 등 비교적 훈련을 통해 교육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 특수학교에서는 아동들보다 수준이 현저히 낮아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 성취를 이루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고, 학교에서는 ‘특수반’에서 이런 아동들을 케어하고 있어 결국 비장애 아동들과의 통합 교육을 기대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역아동센터에는 비장애 아동들과 마음껏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 아동들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나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진다면 효과적으로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청합니다

1 장애성 아동들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프로그램 지원

공약64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응한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22.2% 가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때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한 청소년 가운데 44.6%는 사업주에게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했음.

또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부당한 권리 침해, 폭언 등의 인격모독을 당해도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노력이 미미하며,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

사업주의 경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을 무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청소년 노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

◎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주요기능

-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 청소년 노동인권실태 조사 및 아르바이트 바로 알기 홍보
-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주 고용관련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체험활동
- 아르바이트 연계 및 모니터링 활동

◎ 이용대상 : 15세 ~ 24세 미만의 청소년

요청합니다

1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중 사자(시설)복지분야

사회복지종사자(시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공약65 사회복지시설 법정배치인력 기준 및 임금가이드라인 준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2011.3.3.),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2012.12.31.),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들은 법률에 따른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인력 배치구조로 인한 업무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설유형별 직무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법정배치기준 방안모색이 필요하며, 최소 법정배치인력 기준에 따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비지원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국비지원시설 등), 동일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유형별 상이한 보수체계로 인한 격차 발생, 시설유형에 따라 보조금 지원방식의 차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차별지급 등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며,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 시설유형별 직무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법정배치기준 모색
 - 배치기준 인력 전원에 대한 인건비 100% 보장
 -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평가제도 마련
- 2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호봉 미적용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ex)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 3 **포괄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원 확대**
- 4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현실화를 위한 예산 지원**
-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 복지카드(포인트) 발급**

공약66 사회복지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열악한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 사기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대구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수준에 미치는 열악한 상황으로 동일 법인 내에서도 상이한 보수체계로 적용되어 종사자들 간의 보수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사회복지별 인건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만으로 배치된 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어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법적 배치인력보다 적은 수의 인력을 채용하는 등 최소한의 인건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무색해지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더이상 분야별 차별이 없도록 개선이 시급합니다.

요청합니다

1 법률에 근거한 표준인력에 대한 인건비 100% 보장

- 필요예산 : 년 18천만원

2 대구시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100% 지급

- 대구시 사회복지 종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100% 지급

공약67 여성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일,가정양립 정책지원 강화

현재 아동양육시설의(이하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월에 시간외근무 40시간(시간외근무수당지급)과 휴게시간 40시간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회복지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현장의 이러한 근무행태는 여성 종사자(시설)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도 다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법적 근로시간 준수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자리 나누기(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 생활지도원 1명이 매월 시간외근무 40시간과 휴게시간 40시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활지도원 2명의 시간외근무와 휴게시간을 나누면 1명의(월160시간)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사회복지현장의 일자리창출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여성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환경 보장

- 법적 근로시간 준수(연장근무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 가능하게 근무환경조성)
-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야간) 폐지(또는 금지)
- 출산휴가, 육아휴직 의무제 도입
- 최소한 임신부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준수(근로기준법 72조)

공약68 학생의 복지권 보장을 위한 전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

- 국가와 지자체는 학생들의 복지권 보장을 위해 교육기본법을 지키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학생의 복지권 보장을 위해 교육복지사가 필요함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여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노력함

<대구시 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 /2008년	2009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천원)	2,188,609	3,401,000	6,358,218	5,601,510	6,389,778	5,329,700	14,417,752	16,293,813	7,847,498	7,855,924	8,664,293	8,223,918
학교수	16교 (유, 초, 중)	25교 (유, 초, 중)	49교 (유, 초, 중)	58교 (유, 초, 중)	139교 (유, 초, 중)	320교 (유, 초, 중)	321교 (유, 초, 중)	322교 (초, 중)	341교 (초, 중, 고)	352교 (초, 중, 고)	335교 (초, 중)	334교 (초, 중)
복지사 배치교	16교	25교	49교	58교	116교	116교	174교	174교	158교	151교	147교	143교

- 사업추진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배치된 교육복지사가 학교폭력,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과 연계하여 학생지원을 실시하여 효과를 거둔 예가 많음
- 대구시 민관합동 사례관리사업에서 학교의 교육복지사에 의해 발굴된 학생 사례가 많이 다루어짐
-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에 대한 대책 부족
 - 현재 대구지역은 교육복지사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해마다 교육청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복지사 배치/미배치교가 결정되어 매우 불안정한 실정임
 - 이에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의 학생들은 전문인력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함

요청합니다

- 1 정기적인 학생 복지권 보장 실태 조사
- 2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 수립
- 3 교육부 훈령 제106호를 준수한 교육복지사 직무 범위 규정 및 처우 개선
 - 제12조(사업전담인력의 배치, 활용) / 제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공약69 사단법인 사회복지종사자 경력 인정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유사경력 인정 처리지침에 따라 군복무경력 100%,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경력 80% (단,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100%),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 근무경력 80%로 인정 대상 경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경력인정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이 80%지만 대구시에서는 예외적으로 100%로 적용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을 근거로 설립된 장애인단체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경력인정 80%로 국한되어 있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위탁·관리하는 등 시설과 대비하여 업무량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100%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처우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한 사회복지영역의 근무경력에 대해 100% 인정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유사근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지침 개정을 통한 사단법인 근무경력 100% 인정)

▶ 내부지침 개정(안)

현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유사경력 인정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사회복지경력 100% 인정함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보건복지부 및 대구시가 인정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중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이 주 목적사업인 법인
3. 국고(지방비포함)지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공약70 장애인과의 개방형 행정직(장애인당사자) 채용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장애인과의 개방형 직위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개방형 공무원 임용에 외부전문가의 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개방형 공무원제도 도입 후 업무개선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장애인복지 정책은 발전되고 있으나 지역성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요구의 현실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장애인복지종사자 및 활동가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에 개방형 직위를 마련하고 장애인당사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장애인과의 개방형 직위 마련 및 장애인당사자 채용

공약기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행복한 사회복지시설

구청, 시청, 보건복지부 등 관의 복지시설 감독업무가 점검, 감사 위주여서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어떻게 아동을 잘 자립시켜 사회에 잘 진출하도록 할 것인가 보다 관이 요구하는 법, 기준, 규정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각 시설이 지적받지 않기 위한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할 복지가 점검, 감사 위주로 되어 직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복지 서비스질적저하로 연결되어 시설 생활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시설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청합니다

1 규제, 점검, 감사, 감독 위주의 복지정책 →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



함께 누리는 복지친화도시
대구광역시

**집단급식소 운영 복지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의무 배치**

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배치 기준은 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30인 이상의 입소 인원 기준, 장애인복지시설은 50인 이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은 50인 이상의 입소자 기준, 사회복지관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등 입니다.

따라서 1회 이용인원 50명으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식품위생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입소인원 5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제외되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지도점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에 의거, 집단급식소에는 자격을 갖춘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요청합니다

- ① 식품위생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에 자격을 갖춘 영양사 의무 배치
- ② 입소자를 포함한 이용자,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모두를 급식인원(50인 이상)으로 보는 식품위생법 준용
- ③ 법적 의무 사항인 영양사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공약73 사회복지시설 퇴직적립금 운용관리 수수료 지원

퇴직적립금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퇴직적립금 운용·관리 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아 해를 거듭할수록 시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 1 사회복지시설 퇴직적립금 운영관리 수수료 보조금 지원



대구 지역에는 8개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기관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응급관리요원이 총 16명으로 1,830명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장비와 안전 확인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응급관리요원은 설치된 응급장비를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업무와 혹서기/혹한기, 명절 기간도 24시간 365일 안전 확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 2개월 1회 전대상자 장비점검에 의거 센터별 매일 7~8가구를 방문해야 합니다.(300가구÷40일=7.5가구) 안전 확인 외에 응급상황발생으로 인한 출동과 응급장비의 전원차단 혹은 데이터 미수신, 장비불량으로 인한 수거, 배터리 교체 등으로 인한 방문을 합친다면 10건~15건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동수단이 없어 위탁기관의 차량을 간헐적으로 임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중 주유비 및 사무용품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매월 28만원으로 주유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365일 24시간 응급대기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응급관리요원들이 보건복지부 2018년 사회복지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1,700,000원과 비슷한 1,720,000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근무시간외 수당은 없는 현실입니다.

요청합니다

- 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과 운영비 지원
- ② 사업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 현실화
- ③ 2018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공약75 읍면동복지허브와 민관합동사례관리사업 전용 전기차 지원

대구지역 26개 사회복지관은 2017년 하반기부터 대구시와 함께 읍면동복지허브화사업의 일환으로 민관합동사례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활성화로 하반기에는 복지관당 사례관리사 1명이 더 충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관에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가정방문이나 자원개발을 위한 기동력 있는 이동용 차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나 가정방문 전용 차량은 현재 대구 26개 복지관에서는 전무한 상황이기에 사례관리 전용 차량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읍면동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 전용 전기차를 지원받은 바 있으며, 정작 읍면동복지허브화 민관합동사례관리 사업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전용차량이 전무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민관합동사례관리 사업에 필요한 자원연계 및 가정방문 전용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사례관리대상자들의 긴급한 욕구에 즉각적인 대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사례관리사업 전용 차량 1대씩 지원(27개 복지관)





함께 누리는 복지친화도시
대구광역시

III부. 613 지방선거 사회복지 **구군별 공약**
District pledge



District pledge



공약 1 동구지역 정부 미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사 배치

현재 정부미지원 시설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조리사 지원을 받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어린이집은 원장이 주방까지 관리하여 업무 부담이 큼니다.

동구 가정어린이집 경우 시니어 프로그램인 ‘아이사랑돌봄’ 지원을 받고 있으나 63개소 중 20여개소만 지원되고 월 10회 파견되기 때문에 계속 근무가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시니어(senior)프로그램보다는 원에서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연령대의 조리사(시간제, 일 4시간)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시간제 (일 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조리사 지원
- 2 급식보조인력에 대해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도록 인건비 보조

공약 2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상향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17개 시도의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대구, 인천, 대전, 강원도의 4개 시, 도만 제외하고 모두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의 경우, 물가 상승,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수년째 400만원(시비 300만원, 구비 100만원)을 퇴소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시설을 퇴소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아동들에게는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요청합니다

- 1 타 시도와 같은 금액인 500만원으로 상향 지급 요망

공약 3 동구지역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 1명 충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2조*11에 의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에는 2세까지 아동 2명당 1명, 3~6세까지 아동 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의 2교대 생활지도원을 두게 되어 있으나, 대구광역시의 재정형편상 정원 대비 약 66%만이 충원된 상황입니다.

이는 아동과 가장 밀접하게 일을 하는 생활지도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게 되고 연차휴가조차 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무의욕 저하와 사기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19개 아동양육시설 당 1명의 생활지도원 충원

공약 4 동구지역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실내 활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쾌적한 환경 및 아동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공기청정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보조금에서 구입불가로 인해 비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진단검사비(소방, 가스, 전기 등) 조차 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이 매년 드림스타트를 통해 개별 지역아동센터로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아동복지교사의 선발과정에서 배치과정까지 시설의 의견반영이 완전 배재된 채 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공기청정기 설치(대여)

통상 공기청정기 설치 및 등록비는 무료, 임대료는 센터 당 1대,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하되 대여 기간 동안 일상점검 및 필터교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치 이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요청

- 2 안전진단검사비(소방, 가스, 전기 등) 지원

- 3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 행정절차 개선

공약 5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동구 인증제안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의 권리를 지역의 공공정책, 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적 대책, 지역의 예산에 반영하며, 아동의 생활환경, 특히 가장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들의 생활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최초로 인증 받았으며, 이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기대효과로는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고 이들의 필요와 견해가 지역의 기획시스템에 통합되도록 하며, 의사결정자들과의 접촉과 관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의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참여권 보장, 교육권확대, 놀이 및 발달권 보장이 있으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 체험 및 놀이 공간 조성, 문화 공간 확대 등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출산율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의회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상호 협력적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전국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에서는 중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아동친화 동구 인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수립 요청

공약 6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장 이전(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8개 구·군 센터 중 유일하게 유상임차 및 전용 면적이 가장 협소한 상황입니다.

공간적 한계로 질적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치료실 부재,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활성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회의공간 부재 등으로 인한 동구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 1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 청소년복지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 2 센터 내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공약 7 청소년들의 비행·일탈 방지를 위한 놀이 공간 마련

저소득층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청소년문화의 집 등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인력이나 접근성에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위기 청소년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일반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미미합니다.

요청합니다

- 1 부모의 맞벌이, 생계형 방임 등으로 야간 돌봄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 및 범죄, 학교 부적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시설 설치
- 2 청소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건전한 놀이, 문화, 돌봄 프로그램 실시

공약 8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배치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배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개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다양한 청소년 정책분석 및 수요 파악을 통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청소년 요구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 수원시가 전국최초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대구시는 수성구청, 달서구청에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 주요 역할

청소년활동지원, 복지, 보호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시행합니다.

요청합니다

1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배치

- ▶ 청소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구청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설치
- ▶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전문성 강화

공약 9 청소년 문화·예술 및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거리 조성

동구지역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욕구조사 결과, 놀이 및 체육 공간,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구 청소년 욕구조사 결과, 2017)

현재 동구지역 청소년이 73,449명(동구 전체인구의 20%)의 청소년들의 놀이 및 문화 공간은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수련원 등의 일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구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공연의 장,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 마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건전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거리 조성

- ▶ 청소년 문화·예술 거리 마련 및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약10 동구 청소년 아르바이트지원센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응한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22.2%가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때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한 청소년 가운데 44.6%는 사업주에게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을 무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청소년 노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청소년 노동인권실태 조사 및 아르바이트 바로 알기 홍보,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주 고용관련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체험활동, 아르바이트 연계 및 모니터링 활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약11 동구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구조 현실화 개선

동구지역 어르신 84,826명(동구 전체인구의 24.2%)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구지역 노인종합복지관에는 구비 추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아,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운영측의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년간 평균 1억원상당의 원가 부족분 발생)

이는 어르신들에게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전문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과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요청합니다

1 노인복지관 운영비 현실화를 통한 어르신 맞춤형 복지 실현

공약12 재가어르신을 위한 구비 증액 요청 (특별지원사업비)

1. 동구재가노인복지협의회 연합 어르신 제주 나들이 경비 지원

2017년 제1회 관내 어르신들 중 제주도 여행을 한 적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연합어르신나들이를 실시한 바 98%의 만족도로 나타났습니다. 동구는 고령자가 타 구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사각지대 및 최하위 삶을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구 특별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 동구재가노인복지협의회 특화사업 수행비 지원

‘우리 동네 애(愛)’ 프로젝트

동구재가노인지업협의회는 중 기초생활수급 및 사각지대 어르신께 주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 8개 시설에서 1,2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마을안에 있어도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성질환과 우울감으로 고독사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살아 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주어 온 마을이 살맛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있지만 찾아가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재가노인복지에 찾아가는 복지에 바탕을 두고 있어 갖고 있어 기존 인프라와 노하우로 독거노인이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1개 기관 예산

120명의 어르신들에게 5가정을 연결해주고 어르신과 가정에게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접목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 사항은 기관이 부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재원을 마련합니다. 기존 재가노인대상자와 조손세대도 포함시켜 사례관리를 기관별 수행한다며 한 기관당 140명*5가정*4인가구=2,800명의 이웃이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요청합니다

1 동구재가노인복지협의회에 어르신 연합나들이 특별구비 지원

▸ 8개소*5명*500,000원=20,000,000원

2 ‘우리 동네 애(愛)’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 8개소*2,000,000원*12월=192,000,000원

공약13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대구 지역 8개 구·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 인력에 대한 지원은 매년 차이가 없어 센터의 역할이 축소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기존 정착 다문화가족과 새롭게 유입되는 결혼이민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예산 확보 : 인건비, 운영비등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향상
- 2 서비스 내용 확대
언어, 문화교육, 가족상담, 인권교육, 자녀지원 등의 통합서비스지원

공약14 동구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소규모화 정책개선

장애인복지 관계법령 및 지침, 평가기준, 거주민들의 인권강화 등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대폭적인 업무량 증가에도 보건복지부 인력 및 인건비 권고 기준이 반영되지 못하여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직종별 인력지원 기준안에 설정된 직종의 100%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사, 상담평가요원 등 다수의 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이 현저하게 어려운 거주시설 장애인이 기본 재산이 초과하더라도 거주시설 이용권이 보장되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대상과는 별도의 특례 제도 마련으로 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대규모 거주시설들의 운영형태의 전환, 기존 인프라의 기능개편이 가능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청합니다

- 1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
시설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들의 업무 과다 해결

공약15 동구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구비보조금 현실화

대구광역시 8개 구군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수 및 인구 수를 살펴보면 달서구, 수성구, 동구 순으로 전체 3번째로 많은 수급권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 구군별 보조금 지원금 순위를 살펴보면 8개 구군의 끝에서 2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일 많이 지급하는 달성군과의 차액금액은 125,500,000원이나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향상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구비보조금의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요청합니다

- 1 종합사회복지관 구비보조금 증액
‣ 20,000,000원 × 5곳 = 100,000,000원
- 2 통합서비스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변화

구민 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

서구지역 공약



공약1 서구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설치

최근 우리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 중 서구지역은 베이비부머 세대 비율이 2017년 기준 대구 8개 구군 중 전체인구 대비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구 수성구는 이모작지원센터를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서구베이비부머지원센터 설치운영

- 베이비부머 지원 조례 제정
- 베이비부머 재취업 및 창업지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공약2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 노인복지관 운영비 현실화

대구서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8%이고 내당2·3동, 비산2·3동, 비산5동, 월대동은 노인인구 비율이 21%이상으로 초고령 동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을 2017년 1개소, 2018년 1개소 총 2개소를 추가로 개관하였지만, 접근성의 문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대책(경로당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서구지역 노인복지관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무료화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구노인복지관의 경우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비가 연간 7천 만원정도이며, 이 금액을 법인전입금 또는 후원금 개발로 해결해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1 경로당 활성화 사업 계획 및 재정지원

2 노인복지관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지원 요청

-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유료화 전환 및 추가보조금 지원

공약3 장애인 직업재활 시 근로소득 산정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근로소득(특히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을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하고 있는 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취약계층 장애인들은 직업재활을 위한 활동에서 얻게 되는 소액의 소득으로 생계비 지원액이 삭감되는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의 근로의욕 저하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업재활훈련의 일환으로 참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 일정액 이하에 대해 소득 산정액 제외를 중앙 정부에 요청하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서구지역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보장

서구지역 자체로 특정범위를 협의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소득 실제소득 산정제외

공약4 서구지역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개소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맞벌이 부부나 기업이 공동 육아 어린이집을 만들고,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교사들과 함께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육아 형태를 말합니다. 대구지역 8개 구군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고 수성구는 3곳, 남구는 2곳을 운영하는 등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은 현재 1개를 운영하고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들의 추가 개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 평리권역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및 운영집 지원

공약5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가 재정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이용시간이 2017년 480시간에서 2018년 600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증가된 보조금으로는 연말까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지 못해 중도에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가 보조금 지원

- ▶ 연말까지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구비 보조금 지원요청
- ▶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한 양육친화 도시 만들기 협조요청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시군

공약6 서구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발생이 빈번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이용자들의 복지 증진에 중요한 요소이나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안전 혹은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 배상한도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요청합니다

1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 노후화된 시설 등 기능보강 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한도 명문화

공약7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실시

독거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복지 관리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개별적 관리에 대한 재정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상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구 지역 내 빈 단독주택 등이 증가하고 있는 등 도시 공동화 현상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용인원이 적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일부 경로당이 있어 단독주택 및 경로당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실시

- 단독주택 및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독거노인이 공동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경로당을 독거노인 야간보호 쉼터로 운영

공약8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실시

공공영역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턱진 부분과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특정한 시설을 제공하는 등 barrier free(배리어 프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의 경우 집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거편의 시설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아 집안에서 이동 및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실시

- 저소득장애인가정 barrier free 환경 조성

공약9 서구청 내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 배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라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맞춤형팀이 신설되고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복지허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허브화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간 서비스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최일선에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5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어 복지직 공무원이 동장을 맡고 있는 동이 서구에서는 전무합니다.

요청합니다

1 서구청 내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 배치

-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 중 해당자 5급 공무원 승진 및 동장 배치 실시

남구지역 공약



공약 1 공폐가를 활용한 주거지원 사업

대구일보(2016.05.18.) 대구시 조사자료 중 대구 남구지역 공가 128동, 폐가 354동 등 총482동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기준 2017.12 말 기준 남구의 수급가정은 7,084가구로 차상위를 포함 한다면 그 이상의 주거취약계층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청합니다

- 1 공폐가 활용 주거지원 사업에 지역 일자리를 활용하여 진행
- 2 지역 복지기관을 활용하여 주민 생태계를 조성해 주민지역복지 실현

공약 2 1인가구 고독사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통계청(2015)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남구(36.7%)가 가장 높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대, 50대 중년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으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서울 및 부산광역시 산하 각구에서도 홀로 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와는 별도로 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의 경우 고독사에 대한 위기 인식 하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조례제정을 통해 1인가구에 대한 통합적 전달체계구축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 1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고독사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현황조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복지서비스지원
 - 고독사예방 교육·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등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 상담 및 심리치료·복지서비스·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장례서비스 지원 등 사업에 관한 사항

공약 3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남구 지역 주거형태 및 인구 구성비율 등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중심 (단독주택72%>아파트19%>다세대주택8%>연립주택1%)(남구청 통계연보, 2016), 노인인구 비율(20.4%, 2018), 1인가구 비율 (36.7%, 201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구지역 주민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지역문제로는 1순위) 일자리문제(3.37점), 2순위) 빈부격차문제(3.31점), 3순위)주거환경문제(3.11점)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를 꼽았으며,

남구지역 주민이 인식하는 가장 심각한 마을 문제로 1순위) 쓰레기 등 환경오염문제(3.76점), 2순위) 주택 및 주거환경열악(3.67점) (남구복지관 주민욕구조사보고서, 2016)를 꼽았습니다.

살기좋은 남구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이면서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해 마을관리기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이 필요합니다. *유사사례 : 부산광역시 60만 단독주택지 마을지기사무소 설치(18개소 설치, 국비최초확보)

요청합니다

1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 사업내용 :

-마을 주택 및 환경 관리사업

(전기, 보일러 등 수리, 쓰레기 분기수거, 골목환경 정비 등

-고령화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 세탁사업(이불빨래), 반찬나눔 등

-무인택배보관함운영 등

▸ 추진방법

-마을 유희공간 활용, -민관 운영협의체 구성

-관리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운영예산확보 필요

공약 4 남구지역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복지시설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 시설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총괄예산으로 인해 인건비의 재정적 압박과 함께 장기 근무자 및 경력직 사회복지사 채용의 한계
- 매년 동일한 총괄예산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사이 딜레마에 놓여있음
- 사회복지 경력 인정기준(80%) 완화
- 인건비 부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수당 미지급
- 사회복지사의 법정휴가에 대한 휴가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
-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경우 관리대상자 대비 직원 수 부족으로 업무과다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사회복지사 배치기준 상향 필요합니다.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지원과 증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남구지역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지원
- 사회복지경력 인정기준 완화
- 장기근속자에 대한 복지 환경 조성(휴가, 포상 등)
- 사회복지종사자의 법정휴가에 대한 휴가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시간외, 연차수당 등)
- 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배치기준 상향

공약 5

노인요양시설 영양보호사 안정화 및 전문화를 위한 '표준근무 모델' 제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노인요양시설은 101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154개소, 주야간보호 206개소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영양보호사들의 수는 현재 몇 명입니다.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마다 2교대, 3교대, 4교대 등의 가지각색 근무형태로 급여 및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한 시설별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통합적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 더 강조하며 노인요양시설 영양보호사 표준근무 모델의 정책적 제시를 통해 모든 문제가 개선되어 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요청합니다

1 노인요양시설 영양보호사 표준근무 모델 제시

공약 6 기억학교의 [대구형 치매관리사업 모델] 고유사업 인정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대구만의 특화된 ‘기억학교’ 사업은 처음 4개소에서 현재 12개소, 연내에 14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억학교’ 사업이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지기능지원등급’ 신설로 경증치매자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확대해 이용대상자 및 사업예산의 중복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 향상 및 보호자들의 높은 만족도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기억학교를 경증치매노인 대상에서 경도인지장애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입소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대구를 치매노인보호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외부펀드 확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역의 우수한 특화사업으로 고유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구형 치매관리사업 모델’ 고유의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시를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1 ‘대구형 치매관리사업 모델’로의 고유화 사업으로의 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차별성 인정하고 고유의 독립적 사업임을 인정
- 입소기준 완화 및 경도인지장애노인으로 대상 확대
-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지원
-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공약 7 무연고 독거노인에 대한 입원 등 의료적 지원책 마련

무연고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발생 시 임시 보호자로 독거노인과 동행한 사회 복지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을 요하는 경우(수술 등) 실질적 보호자를 찾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요청합니다

1 무연고 독거노인에 대한 입원 등 의료적 지원책 마련

무연고 독거노인 입원 시 해당 주민센터의 가족 및 보호자 찾기 등 적극적인 협조 및 대책마련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실시중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의 업무는 ①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댁내장비 설치, 운영 ② 댁내장비 전송정보 모니터링 ③ 정기적 안전확인 및 장비점검 ④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축 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119호출이 아니라 응급호출을 통해 응급관리요원에게 바로 연락할 경우 1차적인 대응은 응급관리요원이 진행하고 있는데, 응급관리요원의 휴가 및 근무시간 외(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동안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기상태가 24시간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비스의 질은 현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응급관리요원인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요청합니다

1 지역사회 응급안전알림체계 확대

-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거점응급관리요원, 이웃주민, 통·반장, 가족, 활동보조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망체계 마련
- 지역센터의 운영비를 활용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상시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지자체 예산 지원 또는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마련

2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

- 각 지자체별 응급안전관리수당 통일
-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 외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안 마련·운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인력 처우개선

공약 9 **요보호특수아동의 효과적 돌봄을 위한 전담돌봄인력 배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특수아동(장애아동, 위기가정, 경계선 아동 등)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이용아동 29명 이하인 경우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총 2명이 전부이며, 이러한 인력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전원을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특수아동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담돌봄인력의 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요청합니다

1 지역아동센터 내 특수아동의 전담 돌봄인력 배치

특수아동(장애, 경계선, 위기가정 등)의 아동이 이용할 경우 전담 돌봄인력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돌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2 지역아동센터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특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센터상황에 맞는 돌봄인력 지원



공약 10 남구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및 환경개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공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2012.12.31.)에 의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제시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사회복지현장의 동일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관할부처와 시설유형별 상이한 보수체계로 인한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보조금 지원방식에 있어 포괄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경력직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의 차별지급 등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며,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됩니다.

요청합니다

1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향상 및 단일보수 체계 마련

- 근거법률 :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12.05)
- 사회복지시설 단일보수 체계마련 및 사회복지시설간 임금의 형평성 (소관부처, 시설종별 격차 해소) 지원예산확보, 시행
- 기능보강사업 시비 확보, 지원(차량, 시설개보수)

2 독립된 센터 의무 확보 및 운영지원

- 지자체 내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독립센터 운영 지원

3 다문화 특화사업(다문화사례관리,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코치) 종사자의 임금 및 운영비 현실화

- 특수 전문인력 현장이탈 및 서비스 질 저하 예방을 위한 연차별 임금 수준을 고려한 수당(시비) 지급
- 운영(사업)비의 현실적인 예산지원을 위한 시비 추가 확보

공약 11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확대 및 운영지원 강화

핵가족화로 약해진 가족돌봄 기능 보완 및 이웃간 돌봄 품앗이 활동지원을 통해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에 의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설치 운영 중입니다.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공동육아 나눔터공간	1	1	1	2	1	3	1	1
가족품앗이 그룹	10	13	9	7	11	17	9	12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 가족품앗이 활동참여인원이 2011년 38,325명에서 2017년 기준 624,995명(여성가족부 설문현황)으로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독박육아, 맞벌이가정에게 돌봄 장소제공, 놀이프로그램 참여, 정보제공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에 있어 기업체 후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지자체 공간이 미확보시 선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이후 운영에 있어 인건비, 임대료 및 운영비 확보에 대한 문제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욕구는 높으나 설치 확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더불어 사업지원금지원금 확대 및 인건비, 운영비(시설비포함)를 지원 확대하는 방안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1 생활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및 운영지원 강화

- 사업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구군별 생활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중장기 계획수립 시행
- 수요자 맞춤형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기금운용 및 사업자금지원 (임대료, 운영비)

공약 12 다문화여성의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다문화여성의 취업 및 정보제공 위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다문화센터, 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여성일자리센터 등 여러기관을 마련해 놓았지만 다문화여성에게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후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일하기센터가 대구에서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언어능력이나 학력수준으로는 전문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여성의 현실적인 자립지원의 방안모색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다문화여성이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대구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욕구조사(주기적)에 기반한 맞춤형 특화 자립지원 환경조성(부설 다문화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 다문화여성 프로그램 참여 기회 강화(공연/영화 할인혜택 기준 상향, 다양한 사용처 발굴 등)

공약 13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었으나 장애인건강권법 안에는 장애인의 재활체육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세밀히 규정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자체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개별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급여적 혜택이 없습니다.

요청합니다

- 1 국민체육센터 활용 등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지원 확대 도모
- 2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확대
- 3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반건강검진비 급여 확대

공약 14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남구 조례제정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8개 자치구군 중 수성구에만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16개 자치구 중 12개구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마련

공약 15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정책과 고용활성화

장애인근로사업장 3개, 장애인보호작업장 25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2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개 등 현황이며,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훈련 및 기초작업능력 습득과 사회적응훈련을 돕는 역할의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 1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을 위한 근로 및 적응훈련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시설 및 직업재활센터 건립



함께 누리는 복지친화도시
대구광역시

북구지역 공약



공약 1 북구지역 베이비부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계획 수립

북구 지역의 베이비부머 인구는 55,788명으로 북구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행정적인 대책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00세 시대에 은퇴 후 베이비부머들이 가는 상실감과 고립감 등은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 1 베이비부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및 행정체계 구축
- 2 지역별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 추진 (The Second Start Academy)

공약 2 북구거주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및 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북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주거, 경제, 생활,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실태를 알 수 있는 현황자료는 2011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가 가장 최근 연구 자료인 상황에서 변화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생활실태,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지역에 중도입국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일반현황(거주인원수, 연령별 및 성별 분포 등)의 기초자료가 없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무자의 경험적 근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 1 5년 단위의 대구지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공약 3 공공후견인의 활성화 방안 모색

현재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기는 하나 무연고 장애인들이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그 절차나 활동에 대한 제약 그리고 행정적 부담감 등으로 인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요청합니다

1 공공후견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 제도 마련

공약 4 입소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대규모 시설의 지원 확대

이혼, 가정 붕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인력문제, 소규모화 정책으로 대규모 시설에서의 다양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과 달리 입소시설의 입소자들의 경우 입소가 어려워지면 다른 방을 찾기가 전무한 상황이다. 소규모화 정책에 맞는 실질적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1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대규모 시설의 현실적 지원 확대 방안 마련

공약 5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017년 9월 종사자 증원이 있었으나 생활재활교사에 대한 증원만 이루어져 타 직종(조리원 등)의 증원도 필요. 산업보건법에 의거하여 교대근무자들은 특수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00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업무량이 30인 소규모시설의 업무량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관리직의 인원수는 동일하여 100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관리직 인원 보충이 절실하고 평가기준 강화, 인권강화 등으로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지만, 교대근무(시간외40시간)를 하지 않은 사무실 근무(시간외 20시간)를 한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가 적은 것은 근로자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있어 현실적인 증원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즘 미투운동으로 성추행과 성폭력 사태가 심각한데 남성 지적장애인들의 여성직원들 대한 성희롱의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나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보호 등 이유로 여성 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들은 성희롱, 성추행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들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 근속연수에 따른 안식월을 지급하여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거나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종사자 처우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1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 지원 필요
- 2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보조금관리에 따른 법률 등의 개정
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에 따른 지원 필요
- 3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예방 및 시간외 수당 확대 필요

공약 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 충원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특히 종사자 인력의 부족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리사와 같은 직군의 정규화가 필요하며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등의 정규화된 보상 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지역아동센터 인력 충원 (사무원 및 조리사)
- 2 종사자 워크숍이나 힐링 프로그램 등의 지원
- 3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점검 지원

공약 7 사회복지시설 안전강화 지원

최근 경주, 포항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 및 환경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관들이 노후 되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시급한 기관이 많음에 따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1 노후 된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기능 보강 계획 수립

공약 8 종합사회복지관 구비 운영비 지원 확대

대구시 8개 구군의 인구수는 달서구, 수성구, 북구 순으로 북구가 세 번째로 많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수 및 인구수를 살펴보면 달서구, 수성구, 동구, 북구 순으로 전체 네 번째로 많은 수급권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 구군별 보조금 지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8개 구군 중 끝에서 2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일 높은 달성군과는 125,500,000원이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향상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구비 보조금의 증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비 지원의 현실화

북구지역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중 기초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푸드뱅크 2개소 중 1개소만 인건비 25,000만원 지원되고 있으나, 인건비도 3년째 동일인 상황이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확보를 통해 운영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영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물품 수령을 위한 차량비, 홍보비 등 연간 1,000만원이상의 운영비가 시설 부담으로 소요되고 있어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간 2개소에서 633,178,105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역사회기관 및 단체, 재가대상자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 달서구 25,000만원(인건비), 중구 4,000만원(운영비, 인건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2개소에서는 각 600명(총 1,200명)의 이용자들을 선정하여 월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은 운영비 15,000만원으로 사회복지무원 등 보조 인력이 배치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운영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타구의 경우, 중구 4,000만원(인건비, 운영비), 달성군 3,000만원(인건비, 운영비), 달서구 3,120만원(인건비, 운영비), 남구는 2,000만원(운영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기초푸드뱅크 전담인력 인건비 현실화 및 운영비 지원
- 2 푸드마켓 전담인력 확보 및 인건비 지원,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

공약 10 북구지역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 연합나들이 지원

북구에는 6개의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있으며 2017년 어르신 연합 나들이를 실시하였으며, 참여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와 어르신들 간의 화합과 친교 및 정서적 소외감 예방에 대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각 센터별 예산규모와 인력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그 지속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북구의 사각지대 및 저소득 재가어르신들을 위한 북구 특별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어르신 연합나들이 예산 지원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공약 1 장애인복지시설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및 기능보강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지진 등의 재난상황 발생시 상대적으로 대피에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노후된 시설들이 많으며, 대구광역시 또는 구청에서 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기관 내 안전교육(응급상황 대처, 대피 등)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안전은 점검 및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기능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 1 장애인 복지시설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및 기능보강 지원방안 수립

仁者壽城

공약 2 수성구 장애인 운동처방센터 및 건강운동실 개소(확충)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운동처방에 따른 전문적인 재활운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비만 등 다양한 성인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나 보건소, 재활병원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건강관련 전문 기관이나 운동시설이 설치된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장애인 운동처방센터 및 건강운동실 주요기능

- 운동처방에 따른 전문적인 재활운동 및 건강관리
- 장애인의 비만 등 성인병 예방, 장애인 건강 및 운동관련 연구 거점 기관

요청합니다

1 운동처방센터 및 건강운동실 개소(확충)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공약 3 수성구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운영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구강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 특성상 치과진료의 경우 전문 의료장비와 전신마취 등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전문 치료기관이 1개소(2015년 개원한 대구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개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치과진료비 부담 감소 및 장애인 구강보건 관련 연구 등의 기능을 갖춘 장애인 치과병원 운영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개원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필요한 비용 및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공약 4 수성구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및 가족관련 정책 수립

대구광역시 등록 장애인은 117천여명으로 추정장애인은 이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이들 장애인들은 장애유형 및 특성,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일관된 정책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들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애 유형이 15개가 되는 만큼 각 장애유형에 맞는 지역별 특성화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수성구 특성과 각 장애유형에 맞는 다양한 지원정책, 시범사업 수립 및 운영

공약 5 장애인 자립을 위한 수성구 공동협의체 구성

장애인(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령기를 지나면 자립생활로 연결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공과, 직업훈련센터,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등으로 순환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체험홈, 자립생활지원센터, 평생교육지원센터, 직업훈련센터 등 다양한 자립관련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관들을 응집하여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또는 협의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 장애인 자립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 건의 등의 기능을 갖춘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장애인 자립을 위한 수성구 공동협의체 구성방안 수립 및 지원

공약 6 수성여성프라자 건립

수성구는 2012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2016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 건립한 수성여성클럽은 지역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취업지원, 여성친화마을조성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시설 인프라 확보의 미흡으로 각 부처의 지원사업 수행이 불가하거나 어려울 뿐만아니라, 여성들의 상시 이용시설이 전무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광역시 타 구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여성전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성구 여성들의 종합문화센터, 여성 직업훈련지원시설, 여성친화도시 교육지원시설, 수성구 여성 조사연구, 정책건의 등의 기능을 갖춘 수성여성프라자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수성여성프라자 건립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 예산확보 및 건립부지 확보



공약 7

수성구 베이비부머세대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현재 수성구에서 대구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인생이모작센터로 승격시켜 수성구 지역의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2017년 범물노인복지관 및 고산노인복지관 인생이모작 사업 실시
- 2018년 수성구 평생교육과에서 인생이모작사업 실시

◎ 타지역 현황

- 서울 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센터, 50플러스캠퍼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센터 운영중)
- 부산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인천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 대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 부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등

요청합니다

1 수성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운영방안

- 예산 : 연간 4억원정도
- 인력 : 총4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 내용 : 인생설계, 사회공헌, 이모작프로그램, 커뮤니티, 동아리 활동, 경력개발, 일자리사업 등

공약 8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운영 복지시설

「식품위생법」 준용한 영양사 배치 및 보조금 지원

대구지역 종합사회복지관중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배치되어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를 운영함에도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는 상황이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영양사 배치기준을 보완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1 회 급식인원 50인 이상 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배치기준 마련 및 인건비 지원

공약 9

수성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리미 수행을 위한 전용차량 지원

수성구 내 대구홀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4년부터 수성구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리미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담인력 2명이 24시간 상시로 수성구 독거노인 134가정, 중증장애인 91가정에 닙내 응급장비설치, 대상자 관리(안전교육등), 응급상황시 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응급장비설치를 위해 전담인력은 사다리, 전기드릴, 기타 응급장비등을 지참하여 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용차량이 없다보니 평소 복지관 차량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차량은 고유 업무인 도시락배달, 가정방문, 후원물품수령등에 미리 사용하고 있어 긴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출동이 어렵습니다. 또한 대중교통(택시) 역시 장비(사다리, 전기드릴등)를 가지고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긴급상황 발생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가정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차량을 지원

공약 10 아동복지시설 법정 종사자배치기준 준수

매년 발행되는 ‘사회복지 아동분야 사업안내’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 근무하는 인원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에 맞는 종사자 인원 배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추가로 근무한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조리원은 30명 초과시 1명을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1명의 조리원이 근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 보육사 2교대는 어려운 상황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시간외 수당도 100% 지원이 어렵고, 휴일수당은 당연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임상심리상담원 및 생활복지사는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30명 이상 1명의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나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 전체필요예산 확보 후 조속한 지원

공약 11 지역아동센터 시간제교사 근무시간 확대

현재 파견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들의 인원은 17명입니다. 이 중 12명은 전일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5명은 시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교사들의 근무시간은 1일 3시간,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어, 시간제교사를 파견하지 못하는 주1일의 공백이 발생해 아동들의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시간제교사의 근무시간 확대하여 학습지도 공백 해소

- 전체필요예산 : 5명*주15시간*12개월*12,000원=8,640,000원



공약 1 아동의 안전한 이동 확보

동성로가 위치한 중구는 많은 이륜차가 인도로 무차별적으로 다녀 안전을 위협받을 때가 많습니다.

요청합니다

- 1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보호구역 확대
- 2 이륜차 불법 통행 단속 강화

공약 2 전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대구 중심가인 중구지역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아이들에게 안전 위협에 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안전사고(납치, 성폭력 등) 위험이 높습니다.

요청합니다

- 1 경찰 or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전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배치
- 2 위험시 24시간 편의점을 활용한 대피장소 확보
(편의점 비상벨을 통해 경찰 지원)

공약 3 청년이 살기좋은 중구-주거안정 및 청년공동체 만들기

중구는 많은 청년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문화생활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수는 타구에 비해 적습니다.

또한 동성로를 비롯한 일대는 청년들의 모임과 소통의 장소로서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소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청년들의 주거안정

- ▶ 노숙자를 위한 “행복나눔의집”의 예로 중구에 일자리를 둔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 마련
- ▶ 일정기간 이상 중구에 거주하며 중구에 일자리를 둔 청년들에게 일자리 수당 지급

2 청년공동체 만들기

- ▶ 건전하고 발전적인 청년들의 소통 장소 만들기
- ▶ 소통장소에서 다양한 인생, 교육, 일자리, 공연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대구지역 청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모임의 초석을 다짐

공약 4 취업컨설팅 지원, 취업·창업지원

중구는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다양한 소통의 장소인 동성로를 배경으로 올바른 취업 및 창업, 안정된 일자리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취업 컨설팅 지원, 취업·창업지원

- ▶ 취업준비생에게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
- ▶ 청년들의 다양한 재능과 기술 등을 발휘한 창업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지원

공약 5 여성 안전 대피소 지정 운영

중구는 불특정 다수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여성 안전 대피소를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편의점, 가게 등)
- 2 여성 안전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한 홍보(캠페인 등)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공약 6 신나는 직장맘 보육환경 개선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증가에 따른 맞벌이 부부 증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 추세이나 이에 대한 서비스가 미비한 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지역 내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자조모임을 형성하는 공간을 활성화 하여 그들의 일-가정 양립과 자녀돌봄 기능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역할이 가능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중구 관내 1개소(남산4동)에 그쳐 접근성을 고려한 확대 개소가 요구 됩니다.

요청합니다

- 1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자녀돌봄 부담 경감
 - ▶ 맞벌이 부부 육아정보나눔 공간 확대지원 필요 ex) 중구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개소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부모-아버지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공약 7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 다가올 베이비부머세대를 준비한 노인일자리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일자리사업의 다변화 및 양적 확대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시장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시설 지원

- 구청 및 관공서의 유휴공간의 무상임대 지원 방안 마련
- 시장형 일자리사업 특성상 필요한 초기자금 지원(최소 5,000만원 이상)

공약 8 노인일자리 생산품 관공서 우선구매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로 확보가 어려워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활성화 위축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일자리 생산품 관공서 우선구매

-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관공서에서 우선 구매토록 계획 마련
- 노인일자리 생산품 소식지 및 홈페이지 안내 등의 홍보

공약 9 중구지역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 일자리사업인 노노케어사업에 대한 효율 및 효과성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자리사업은 예산에 맞춰 노노케어사업의 양(대상자 수, 수혜자 수)을 정하고 있으며, 실제 필요한 대상자수에 비해 예산규모(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역지로 사업으로 꾸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필요한 노노케어사업의 대상자수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현 노노케어 사업은 보조금의 누수문제임을 대부분의 수행기관이 인식하고 건의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고 해마다 증가하는 기이한 정책입니다.

이는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노노케어 사업의 문제로 수행기관이 문제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노인일자리 확충)이라는 명분하에 보여 주기이며, 짜맞추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일자리 생산품 관공서 우선구매

-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관공서에서 우선 구매토록 계획 마련
- 노인일자리 생산품 소식지 및 홈페이지 안내 등의 홍보



공약 10 광역 노인복지관 건립

2.28공원, 국채보상기념공원 등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공원들이 많은 지역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중구노인복지관이 건립되었지만 중구 노인뿐만 아니라 중구로 유입되는 대구시 전체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광역 노인복지관 건립

- ▶ 대구의 중심인 중구는 유동 노인 인구수를 감안하여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 중구지역 어르신뿐만 아니라 대구시 모든 어르신이 이용토록 하기 위함
- ▶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대구시 전체 노인 인구를 감안하여 대구 중심지에 광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예산 확보 필요

공약 11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

관공서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1 중구지역 장애인 생산품 관공서 우선 구매

- ▶ 관공서에 중구지역 장애인 생산품 안내(공문, 소식지, 홈페이지 등)
- ▶ 관공서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토록 의무 규정 강화

공약 12 모든 장애인들이 행복한 중구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중구는 대구의 중심으로 많은 유동(타지역 포함)인구들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접근성이 높고 유동 장애인 수를 고려한 광역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장애인복지관 건립

- ▶ 접근성의 요충지인 중구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 ▶ 모든(대구지역, 관광객 등) 장애인들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약 13 다문화가족 장기 정착화를 위한 광역형 다문화이주민 원스탑지원센터 개소

다문화가족의 정착기간이 점차 장기화됨에 따라 언어·문화차이에 따른 어려움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자녀 양육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욕구, 결혼 이민자들의 미래설계, 취업욕구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의 부족 및 지원예산의 부족 등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한 곳에서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기관의 공간통합 및 기능확대 등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중구관내에 광역형 다문화이주민 원스탑 지원센터 설치

- ▶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지원센터를 마련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 모든(대구지역, 관광객 등) 장애인들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2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 예산 지원

- ▶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성장지원,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지원, 통번역서비스 등 기능 극대화를 위한 공간확보 및 예산지원

공약 14 저소득층 안정적인 보금자리 만들기

중구는 재개발, 재건축, 근대로의 여행, 김광석거리 활성화 등의 사유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저소득층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구를 떠나 낯선 서구, 남구로 이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청합니다

1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방안 마련

- ▶ 기존 거주 주민이 익숙하고 살기 좋은 중구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확보
- ▶ 임대료 상승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공약 15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현실화

현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으로는 상승된 최저임금을 맞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의 90%까지 인건비를 줄 수 있지만 전체 보조금의 90%조차도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요청합니다

1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현실화

-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현황 조사를 통한 인건비의 현실화

공약 16 사회복지시설 출산휴가자 인건비 지원

출산휴가시 휴가자에게 3개월간 근로복지공단 지원금(150만원)외에 임금은 시설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월 60만원(3개월 180만원)이 지원되어, 총 210만원(공단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으로 모든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출산휴가자 및 기관 서로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요청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출산휴가 인건비 지원

- 출산휴가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계획 및 예산확보
-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계획 및 예산확보

공약 17 행사성 사업 통합

해마다 진행되는 복지한마당과 어르신한마당은 참여대상(어르신)과 성격(부스+체험)이 유사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1 어르신한마당과 복지한마당 행사 통합

- 어르신한마당과 복지한마당 행사를 어르신한마당 행사로 통합
- 복지한마당 행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행사로 변경

공약 18 중구사랑 토크콘서트 사업 추진

2017년도 처음 실시된 토크콘서트는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종사자들의 힐링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행사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요청합니다

- 1 복지한마당 행사를 사회복지 종사자 토크콘서트 사업 진행
 - ▶ 해마다 실시되는 복지한마당 행사를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
 - ▶ 연1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 힐리의 시간 제공

공약 19 중구청 복지 주무부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사회복지시설의 주무부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민·관 소통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이 우선시 되기보다는 사회복지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행정과 복지를 함께 전담하는 복지직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사회복지시설 주무부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 ▶ 사회복지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는 복지직 공무원의 일정 비율 이상 배치
 - ▶ 복지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잦은 인사이동은 자제

공약 20 사회복지시설 법정 의무교육 지원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한 이용자를 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개인정보, 성희롱, 장애인 인식 등에 대한 교육이 어느 사업장보다 강화 되어야 하는 곳이며 이 교육들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2018.5.29.적용)으로 소규모 복지시설은 예산상의 이유로 자체교육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으로 인해 교육의 질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등)을 당하는 복지시설도 발생하고 있어 법정 의무교육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 법정 의무교육 지원사업

- 구청 주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연1회 집합교육 실시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법정 의무교육 지원(강사, 예산 등)

공약 21 사회복지시설 기본환경 마련

법인소유 및 관공서 건물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임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전세비용을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대로 절감을 위해 잦은 이사로 이용자들의 혼란과, 저비용의 임대건물을 찾다보니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 임대료 지원 방안마련

- ▶ 임대 사회복지시설의 임대료 지원기준(안) 마련 및 지원
- ▶ 구청 소유 및 관공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회복지시설 무상임대

공약22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만들기

지진, 화재 등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시 많은 피해를 입히는 사회복지시설은 예산 및 종사자부재(시설전문가) 등의 사유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년 1회 안전진단(화재, 전기, 지진 등)과 더불어 시설의 환경개선(개보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 ▶ 사회복지시설 자체점검이 아닌 전문가(전기, 화재 등)를 통한 년1회 안전진단
- ▶ 관공서 시설관리 전문가를 시설 안전점검단으로 활용 가능
-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에 필요한 환경개선 예산 지원

공약 23 미세먼지 제로 사회복지시설 만들기

차량 이동이 많고 건물 밀집지역인 중구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매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한 집단 활동(교육, 행사 등)이 많아 이러한 미세먼지와 탁한 공기에 더욱 노출되어 있어 공기 질 개선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 ▶ 일정 인원 이상 집합 공간(생활실, 교육실, 강당 등)의 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
- ▶ 연 1회 공기질 측정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공기질 안전 확인

공약 24 중구지역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사업 예산 증액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사업은 중구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락 단가가 낮아 도시락의 질이 낮고 그마저도 주1회, 주3회 제공으로 독거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현재 도시락 단가 3,500원 = 지원금 3,000원 + 기관부담 500원

도시락 배달을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직접 수행하여 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통한 유급봉사자 활용으로 도시락 배달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1 도시락지원사업 예산 현실화

2 도시락배달 전담인력 충원 및 인건비지원

공약 25 웰레폰사업(독거노인 안부전화 시스템) 사업확대

현재 대구시에서 2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시행하는 있는 사업으로 일반 독거노인 안부전화 시스템으로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수혜자도 제공자도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이에 사업 확대 및 예산증액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으면 합니다.

요청합니다

1 웰레폰 사업 예산증액 및 사업확대

공약 26 경로당 이용 노인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지원 및 예산지원

중구 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노인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각 동 경로당 이용 노인을 위한 자체 여가 프로그램지원 및 예산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경로당 이용 노인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지원 및 예산지원



공약 1

대구시 노인복지관 인력기준에 맞는 인력 지원 - 안정적이고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달서구내 노인복지관은 총 2개소로 규모를 기준으로 ‘가’형과 ‘나’형에 해당됩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가’형으로 대구시보조금 지급기준으로 16명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시설이지만 현재 13명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나’형으로 9~15명의 직원이 근무해야 하며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조리인력, 시설 및 차량 지원 등의 인력이 각 기관별 3~4명씩 근무중이다보니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12월 31일 기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17,483명의 회원 중 매일 2,000여명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6,354명의 회원 중 매일 1,05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어 직원들의 소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기준에 맞는 인건비 지원으로 보다 나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요청합니다

- ① 인력 기준에 맞는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② 시설규모에 따라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내 시설관리 직원채용 의무화
- ③ 근로기준법에 맞는 법정 수당 지급(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
- ④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 ⑤ 노인복지시설 내 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등) 확대

공약 2 **어르신이 안전한 달서구 만들기**

달서구지역 내 노인인구는 67,033명으로 대구광역시 노인인구 347,459명 중 19.3%를 차지할 만큼 많으며, 대부분의 노인인구가 지역 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등 노인복지 및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140개 노인복지시설 중 32.8%인 46개 노인복지시설이 달서구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현황만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오래되어 이용에 불편한 곳도 있으며, 많은 인원이 이용하다보니 기간에 비해 노후화가 빠른 시설도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예산 확대로 어르신이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요청합니다

- 1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수리를 위한 기능보강 확대
- 2 화재 및 지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구입·설치
- 3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비(제세동기, 간이 산소호흡기 등) 보급 및 확대
- 4 노인복지시설 내 노후 냉·난방기 교체
- 5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노후 차량 교체

공약 3 신규 노인일자리 창업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기능 확장

일자리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이자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며, 특히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일자리的重要性和 사회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맞춤형 노인일자리 운영과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청합니다

1 노인일자리사업 신규창업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 2022년까지 시장형 사업단 10개 운영 목표/시니어 카페 등 신규 창업 3개

2 노인일자리 작업장 설치

- 휴공간 건물 활용(복지시설 우선 제공)
- 작업장 무상임대 등을 통한 참여자 인건비 상승
- 접근성 향상에 따른 참여자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
- 원스톱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가증

3 노인일자리사업단과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 주거 취약가구(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 100세대에 대한 연4회 소독 및 방역 지원
- 달서구내 보육시설 장난감 및 교육기자재 연2회 소독 및 세척 의무화
- 노인생산물품 우선 구매 및 사용 권장

4 시니어스타가게 발굴 지원

- 구특성화지원사업의 다변화로 신규창업, 취업교육, 계몽, 특성화사업 등 운영
- 지역 내 시니어가 운영하는 가게를 스토리텔링하고 지역사회 마케팅을 통한 홍보

공약 4 증가하는 베이비부머세대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세대는 달서구 내 52,300여명으로 대구시 372,000여명 중 14%를 차지합니다.

베이비부머세대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은퇴를 시작하여 현재 급속히 은퇴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구시 및 달서구에는 이들을 위한 지원계획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고도의 경제성장이라는 사회적 목표아래 취미 및 여가활동보다 생업에만 치우쳐 생활해 왔기에 은퇴이후 계획 등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베이비부머세대의 사회 경험을 살려 은퇴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취미 및 여가활동을 제공하여 노후의 삶이 주도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요청합니다

- 1 베이비부머지원을 위한 조례 및 지원센터 설치
- 2 은퇴 전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을 위한 구 단위 프로그램 실시

 새롭게 도착하는 희망달서

달서구립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인과 영리업체로 영역으로 확대되고 많은 장기요양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지역은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노인주간보호센터들이 새로 오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40개소, 2018년 현재)

이렇게 개인, 영리업체 등 신규 시설이 늘어나면서 공공의 성격이 강한 노인주간보호 서비스가 개인들의 영리를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어짐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달서구의 경우는 다른 구(區)에 비해 구립으로 운영되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2곳(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있어 보다 수준 높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곳 모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2002년 개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2005년 개소) 공공성 및 경쟁력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 구립으로 운영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다른 개인 시설보다는 좋은 환경과 현대화 된 장비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되고 보호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청합니다

1 시설환경 개선

- 내부시설환경, 외부 배회공간 확보, 냉온풍기 설치, 공기청정기 설치등

2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기구 및 장비 지원

- 송영차량, 물리치료, 운동치료 기기, 작업치료도구 등

공약 6 출산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인식개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실천하는 전문 민간보육주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구별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내지 제32조 규정에 따라 재산출연과 동시에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가 설립철학에 기초를 두고 법인과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합니다.

요청합니다

- 1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공보육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인식 개선

공약 7 보육시간과 보육료의 현실화

표준보육과정 편성시간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수당이나 교직원 추가 배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만을 주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환경 및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에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종일형 보육시간 8시간으로 변경
- 2 시간연장 이용에 대한 비용은 시간제보육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공약 8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재가 정신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불완전한 지역사회복귀, 경제적 안정성 미흡으로 인하여 저소득지역에 밀집하는 현상과 의료, 위생, 복지, 대인관계 와해 등의 일상생활영역에서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최대 3년간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으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 현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정신장애인 밀집지역 근거리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추가설치
- 2 독거정신장애인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 및 모니터링요원 추가채용
- 3 재가 정신장애인의 저소득지역 밀집현상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공약 9 사회복지분야 청년일자리 대책

-취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한 사회복지 인력 파견

2017년 청년실업률 9.9%로 청년구직난이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의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이 기초단체 단위의 사업이 운영되는데, 대구는 2016년부터 광역단위의 사업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물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현실적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사회복지시설 내 인력난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장기미취업 청년에게 개별상담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2 개별구직자 대상 맞춤형 일자리프로그램 제공
- 3 지역기업/사회복지시설 중심의 현장체험관련 전문교육 제공
- 4 대체인력지원센터 활성화

달서구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7개소이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리복지관을 제외한 6개소 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슬럼화를 야기하여 낙후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로 개관한 지 20년을 초과하여 시설 및 기자재의 노후, 반복적인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시설별로 유사서비스(평생교육, 사례관리, 자활사업 등) 제공되고, 민·관 고유기능들의 구분이 힘들어 서비스의 중복, 질적 저하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에 노후화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절감하고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중복 방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종합복지센터는 일반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정보를 나누고 다양한 시설들 간 기능을 명확화하여 누락 및 중복을 예방하고 보다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감과 지역의 슬럼화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유관기관이 함께 집중화여 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도심형 종합복지센터(생활밀착형 커뮤니티센터) 설치

- 민(기존 사회복지관)·관(행정복지센터)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함
- 사회복지 유관기관의 집중배치로 유기적 연계 및 협의·조정기능
- 유기적인 사례관리서비스 및 상담, 맞춤형 개별복지서비스 제공

공약 11 사회복지관련 업무 조정 및 사회복지직 확대

달서구청 내 사회복지업무 관련부서는 문화복지국 내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등 4개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많다보니 특정 사업의 경우 부서간 업무 조율이 잘 되지 못하고 주관부서가 어디냐에 따라 떠넘기기식의 업무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구청 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부서를 통폐합함은 물론 사회복지직(사회복지 관련 전공자) 확대배치를 통해 민간 사회복지현장과 소통 및 업무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자원을 개발·관리하는데 있어 민-관 모두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연계기관들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관련 기능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회복지관련 부서 통폐합
- 2 복지정책과 등 사회복지관련 업무 과장의 개방형직위제 도입
- 3 민간과 중복 기능을 가진 부서 업무 조정 / 민간협약
-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담당자와 복지기관 중간관리자의 교류 정례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실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8개 기초단체 중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지역에는 대략 4천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민·관 영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가운데 달서구는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기초단체이며, 7개의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수준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지정 및 그에 따르는 달서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과, 조례에 따른 실천을 요청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중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요청합니다

- 1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달서구 단위의 포상 및 휴가 지급
- 2 육아휴직의무화, 공무원수준(최대 3년) 적용, 복지포인트제도 도입
- 3 구정 옴브즈만 제도 도입
- 4 사회복지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보장을 위한 보안요원 배치
- 5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 (시설관리, 환경미화 영역)
- 6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힐링, 트라우마센터 운영
- 7 유사근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지침 개정을 통한 사단법인 근무경력 100% 인정)

공약 13 달서구 현황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확대

달서구청 내 60만 인구가 거주하는 초대형 기초단체입니다. 보건소, 경찰서 등 성서권역과 월배권역에 따로 설치 되어 운영중입니다. 또한 성서공단지역 등으로 인해 많은 다문화 가족과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달서구 현황에 맞춰 사회복지 시설의 확대가 필요 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성서권역 다문화 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 설립
- 2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공약 14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인 운영비 보조 및 지원 체계 확립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검진 지원(보건소 연계)
- 2 전문적이며 현실적인 아동의무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연계
- 3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확보(도배, 장판 등)
- 4 지역아동센터의 전세금 지원 제도 실시

공약 1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 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의 어려움과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처우로 인하여 잦은 이직과 소진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인건비와 사업비 예산 분리 및 종사자 호봉제 실시
- 2 종사자 처우개선 호봉제, 시간외 및 연차 수당, 장기근속 포상등)
- 3 아동급식 조리사 인건비 확보 및 활동보조 인력 확대(아동복지교사 전일제 지원 및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확대)

공약 16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복지이념이 시설 수용보호 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전환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탈시설-자립전환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대구시의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욕구조사 결과에서 탈시설 의향에 대한 물음에 단순조사 시 58.6%, 지지체 지원 시 70.5%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탈시설-자립생활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1 전환주거 확대 및 전환주거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 2 시설 퇴소자 전세자금 보증금 지원 사업 실시

공약 17 노인장기요양제도 이용 장애인의 돌봄 추가지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65세이상 노인이 되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이용하던 돌봄의 혜택보다 노인장기요양의 돌봄 혜택이 도리어 줄어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이면서 노인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65세이상 노인이 되면 돌봄의 서비스량은 줄어들게 되는 기이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요양제도를 이용하면서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 때보다 돌봄 시간이 줄어든 장애인의 경우 최소한 줄어든 부분만큼 돌봄 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 1 노인장기요양제도 이용장애인의 돌봄 추가지원 확대
- 2 중증장애인의 24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공약 1 아이들의 행복달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현재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구시 전역을 비롯한 달성군 육아인구를 지원하기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달성군의 급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육아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어린이집 자원관리, 일시보육, 육아지원 등의 지원을 통합 담당할 달성군 거점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상담 제공, 일시보육 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1 달성군육아지원센터 설립

- 지역 특화된 육아지원체계 정립
- 다양한 육아지원 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
- 지역 내 육아관련 인적, 물적 자원의 편리한 접근성 및 활용
- 육아지원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 및 체계적 관리

2 달성군육아지원센터의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공약 2 달성의 튼튼한 새싹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 설립

현재 달성군은 관내 군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등에서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 할 수 있으나 어른 및 청소년과 통합된 공간으로 활동이 많은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또한 대구시 타 구청과 비교하여 달성군은 거주인원 및 면적대비 어린이들을 위한 자유로운 학습공간이나 여건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읍, 면 단위의 어린이를 위한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아동들이 책을 통하여 더 큰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읍·면 단위의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 ▶ 어린이성장과 발달에 관계되는 모든 형태의 매체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 배포
- ▶ 어린이가 자발적이고 실제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문화적 자극을 제공
- ▶ 물리적 공간을 최대한 편인하고 자유롭게 하여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의 활동을 격려하면서 독서하는 즐거운 장소 제공

공약 3 달성의 밝은 미래를 위한 다사지역 청소년 센터 건립

현재 달성군은 유가읍과 다사읍의 개발과 발전으로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청소년 인구도 늘어나고 있으며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존의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위치가 논공읍에 위치하여 다사, 하빈 등 타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에게 수혜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2 달성군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인구 증가와 인구분포, 지역 청소년 복지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요청합니다

1 제2 달성군청소년센터 건립

공약 4 함께 꽃피는 달성을 위한 장애인활동서비스지원센터 설립

1. 나들이콜(장애인이동지원 콜택시) 이용의 어려움

대구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나들이콜을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광범위한 지역 특성 상 대구 시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나들이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균 2~3시간의 대기시간이 소요되며 주말 등 특정한 기간에는 배차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달성군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서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달림콜(장애인이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예산지원 및 정책지원이 따라주지 않아 중단된 현실입니다.

2. 문화, 관광 소외현상

장애인의 문화, 관광 활동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욕구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이동의 제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 특성과 연계되지 않아 그 효과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 대두됩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구축된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한 사업운영으로 달성군 장애인들의 이동, 문화, 관광 등 삶 전반에 걸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센터 설립

- 달성군 자체 장애인 이동지원 콜택시 운영
- 달성군 장애인의 문화, 관광활동 지원
- 장애인 이동지원, 문화, 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약 5 글로벌 달성을 위한 다문화회관 건립

지난 3년간 달성군의 다문화 혼인 건수는 14년 68건, 15년 75건, 16년 8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그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문화괴리, 적응, 인식, 가정문제, 자녀양육 등의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달성군에 이러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달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센터의 개념으로 다문화 가정의 전반적인 지원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는 물리적 공간이 협소하여 지원체계 및 사업영역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다문화회관 건립

- 다문화 가정의 위기관리(가족상담, 위기가족)
-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연계 및 특성화 사업
- 다문화 가정 및 자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 이주 노동자의 노무지원 및 근로지원

flower
대구의 뿌리 달성 꽃피다

공약 6 모든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남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현재 달성군 옥포면에 위치한 달성군노인복지관은 그 동안 노인정 중심으로 단순히 여가활동 위주의 활동에 국한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달성군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거리적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 노인복지관의 이용자 또한 포화 상태라 노인복지서비스의 형평성과 보편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노인복지의 형평성과 보편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여 달성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남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 ▶ 다사권 제2 달성군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 ▶ 노년의 삶 전반에 걸친 복합서비스 제공
- ▶ 기성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 조성

공약 7 함께 꽃피는 달성을 위한 자원봉사회관 건립

현재 달성군의 자원봉사의 체계적이며 전문화된 활동의 전개를 위해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재)달성복지재단이 달성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봉사 자원과 활동을 체계화, 과리,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센터가 맡은 역할과 지역주민의 참여도에 비해 운영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며, 다양한 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1 자원봉사회관 건립

- 자원봉사회관 건립으로 지역자원봉사활동의 상징화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지로서 봉사자원의 네트워크화
-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 및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의 산실

공약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사회복지 현장 특히 민간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급여는 타경제 분야에 비해 매우 낮고, 복리후생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임금뿐만 아니라 시설의 이용자를 상대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 또는 개선할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1.3.03), 대구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2012.12.31)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요청합니다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의무가입
-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및 수당 개선 및 평준화
-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 종사자카드 발급

